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 -

임지봉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지역법제 연구 15-16-④-3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 국-

임 지 봉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 국-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United Kingdom-

연구자 :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m, Ji-Bong

2015.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최근에 세계 각국이 정보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정보공개 법제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영국의 최신 정보공개 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 체계 및 법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주요 내용

-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에 대해 그 배경과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 영국의 정보공개법 제에 대해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I. 기대효과

-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 체계 및 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의 법제화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는다.

▶ 주제어 : 영국, 정보공개, 정보자유법, 알권리, 정보화 사회, 정보공개 법제, 정보공개 관리체계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A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apidly entered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each countries have enacted the legislations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openness of government management and guarantee the right to know of the people. Therefore, the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the legislations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is fairly necessary, but the study on the topic is insufficient in Korea.
- This study aims at giving precise informations on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legislation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United Kingdom.

II . Contents

-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and the developments of management system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 We will explore the legislations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United Kindom focusing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the year of 2,000.

III. Expectation

- We will explore implications for Korea from the precise analyses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legislation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United Kingdom.

➤ Key Words : United Kingdom, Public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Right to Know, Information Society, Legislation on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formation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2 장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11
제 1 절 서 설	11
제 2 절 영국의 비밀주의적 문화와 정보공개	11
제 3 절 영국에서 알권리의 발전과 정보공개	25
제 4 절 영국에서 빅데이터 발전과 정보공개	28
제 3 장 정보공개법제	41
제 1 절 서 설	41
제 2 절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41
I. 정보 공개의 대상	41
II. 정보공개 절차	46
제 3 절 개인정보보호법	48
제 4 절 환경정보공개규칙	49
제 5 절 영국 정보공개법제의 특징	50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71

제 5 장 결 론 77

참 고 문 헌 79

<부 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83

제 1 장 서 론

최근에 세계 각국이 정보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 정보공개 법제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 법제에 대한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최신 정보공개 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 체계 및 법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의 정보공개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를 살펴본다. 영국에서의 비밀주의적 문화와 정보공개, 영국에서의 알권리 발전과 정보공개, 영국에서의 빅데이터 발전과 정보공개가 그 세부쟁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영국 정보공개법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2000년의 정보자유법이 영국 정보공개법제의 기본법제이자 핵심법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2000년 정보자유법에 대해 정보공개의 대상과 정보공개의 절차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분석해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환경정보공개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영국의 정보공개법제와 한국의 현 정보공개법제의 비교를 통해 영국 정보공개 법제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마련에 주는 시사점을들을 도출해본다.

제 2 장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제 1 절 서 설

다음에서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를 영국 정보공개의 과거 현황에 해당하는 ‘영국의 비밀주의적 문화와 정보공개’ 그리고 영국 정보공개의 관리체계와 관련한 ‘영국에서 알권리의 발전과 정보공개’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 2 절 영국의 비밀주의적 문화와 정보공개

영국에서는 과묵함이 미덕으로 간주되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비밀주의적 문화’(culture of secrecy)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고, 이 영국 특유의 비밀주의적 문화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영국이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에 뒤처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한다.¹⁾

영국 정부와 정치권의 유별난 비밀주의적 문화는 1911년에 제정된 ‘공무상 비밀유지법’(Official Secrets Act)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허가되지 않은 정보 유출’(unauthorized disclosure)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972년에 가서야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무상 비밀유지법의 정보 공개 관련 조항이 폐지 시도나 정보자유법 제정 시도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보수당 정부의 반대에 막혀 이러한 시도들은 번번이 좌절 되었다.²⁾

1) 정준희, “영국의 정보자유법과 언론”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 2008년 상권(통권 제23호),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2008년 7월 25일

2) 위의 글, 143-144면

그러던 중 1993년에는 정보공개 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었다. 1994년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수기 장부’(manually held personal file)와 국민보건 정보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실행지침’(Code of Practice)을 세워 국민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게 하고 그 과정을 ‘의회 옴부즈맨’(Parliamentary Ombudsman)이 감독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 다음 해인 1995년에는 국민의료시스템(NHS) 정보공개를 위한 실행지침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면제의 범위가 넓고 공공기관의 보유 문서가 아니라 추상적 ‘정보’(information)에 대한 제한적 형태의 접근만을 허락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당 정부는 야당인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이 요구한 새로운 정보자유법 도입 제안은 끝내 거부하였다.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보수당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당시에 정보공개 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적인 진전은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³⁾

1980년대 영국 정보공개제도는 주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이용에 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가맹국에 대한 권고 1981년 제19호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은 국내에서 이 권고를 시행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밀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 1984년 자유보호법, 1985년 지방자치제정보이용법과 1987년 개인파일이용법 등이 그 정책을 구체화한 입법례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보통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측면을 ‘정보이용’이라는 넓은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열린 정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경우인데도 이 두 측면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위의 법 중에서 좁은 의미의 정보공개에 속하는 법은 지방자치제

3) 위의 글, 144-145면

정보보호법이며, 자료보호법과 개인파일이용법은 개인정보보호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1980년 영국에서는 이 법에 근거해서 국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이용권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가진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권만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별 입법이나 규칙을 통해 부분적인 영역의 정보공개를 정하는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⁴⁾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측면을 ‘정보 이용’이라 하여 하나로 파악하는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1991년 메이저 총리정권이 들어서면서 「시민현장」 정책에 의해 영국 정보공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공적 서비스의 평가자인 국민 개개인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제공자인 행정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 시민현장 정책의 하나로 지방공공단체 차원에서 1992년에 지방자치체법이 제정되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1993년 7월에 ‘개방적 정부에 관한 백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 그 권고에 따라 1994년 정부 정보 이용에 관한 내부규칙이 제정되었다. 시민 현장 정책에 기초한 정보공개는 지금까지 개별 영역에 국한된 정보 공개보다도 분명 포괄적인 정보 공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가 자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경우에만 제정법이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가능했다.⁵⁾

이처럼 정부 정보 이용에도 개별입법에 의한 개별영역의 정보공개와 시민현장 정책에 의한 포괄적인 정보 공개의 두 큰 흐름이 존재했다. 나아가 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보아도 법적으로 정보공개

4) 오항녕, “영국 정보공개제도의 발달과 현황 : 미완의 여정” 「기록보존」 1999년 (제12호), 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 112면

5) 오항녕, 위의 글, 113면

제도가 상당한 수준까지 정비된 지방공공단체와 법적으로는 개별영역에만 정보 공개를 인정한 중앙정부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⁶⁾

1. 시민현장

시민현장 정책은 꼭 정보공개를 주목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민영화 및 자유경쟁의 추진을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 정책방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행정 본래의 주인인 시민은 자기의 필요에 부응하는 높은 질의 공적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정보공개는 시민이 공적 서비스를 받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 각 시민이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기준, 공개, 정보, 선택, 공평성, 양질의 정보접근,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 등 7가지 원칙을 시민현장이 제시하고 있다.⁷⁾

2. 지방공공단체

1985년 지방자치제 정보이용법은 시민현장정책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처음 포괄적인 정보공개를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의 법에 의해 어느 정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방공공단체의 정보공개제도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법은 의정의 공개, 일정이나 의사록 등 의정 관련 문서의 공개, 적용범위의 확대, 적용 제외 정보조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이 법은 ‘소위원회’ 규정 등에서 보듯이 법의 적용 범위가 애매한 데가 있고, 둘째, 적용제외 정보에 대한 것으로 애초

6) Id.

7) 오항녕, 위의 글, 114면

제외정보가 4개 조항이었던 데 비해 정부의 요구에 의해 15개 조항까지 늘어났다. 이 시민현장 정책을 지방공공단체의 수준에서 실현한 것이 1992년 지방자치제법이다. 1992년 지장자치제법은 적용 범위, 공개명령,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3. 중앙정부

1980년대에 주를 이루었던 개별입법에 의한 개별영역의 정보 공개 흐름은 1990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EC 지침’ (EC Directive)에 기초한 것으로 대표적인 예는 1990년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이다. 2년 후인 1992년 환경정보규칙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 1990)이 제정 · 시행되기도 했다.⁹⁾

이 외에도 정보공개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 특히 규칙의 대부분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 제2조 제2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내용상 이들 법률과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어떤 정보를 가진 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시키고 일정 정보는 그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것들이다. 둘째, 예를 들어 상업상의 비밀 등 특정 정보를 기밀정보로 하여 공개를 금지하고 그 예외를 정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이다.¹⁰⁾

첫 번째 경우에 속하는 예로는 1994년 석탄산업법(Coal Industry Act)이 있다. 석탄산업법 57조에 석탄국(Coal Authority)이 보유한 탄광의 특징이나 그와 관련된 계획 등 석탄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였다. 또한 59조에서는 개인 또는 상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예외 정보로 인정했다.¹¹⁾

8) Id.

9) Id.

10) 오항녕, 위의 글, 114-115면

11) 오항녕, 위의 글, 115면

두 번째 경우에 속하는 예는 1994년 에너지정보(냉동고와 냉장고)규칙(Energy Information(Refrigerators and Freezers)Regulation)과 1995년 식물보호제품규칙(Plant Protection Products Regulations)등이 있다. 이외에도 정보 이용을 규정한 법률이나 규칙이 조금 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불과하고, 주된 목적이 개인 정보의 보호에 있는지 아니면 정보공개에 있는지 아니면 정보공개에 있는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¹²⁾

4. 정부정보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칙

열린 정부에 관한 백서의 부칙A로 고시되었던 정부정보취급규칙 초안을 원안으로 해서 작성된 정부정보의 접근에 관한 내부규칙은 정부 정보의 접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둔 제1편과 제1편에서 정한 공개 원칙의 예외를 15항에 걸쳐 나열한 제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4월에 시행되었다. 제1편의 내용으로는 규칙의 목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관, 공개될 정보, 정보청구에 대한 대책, 수수료, 제정법에 기초한 접근권과 관련성, 신고된 고충의 조사 등이 있다.¹³⁾

이 규칙은 행정기관내부의 규칙에 불과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또, 내부규칙에 의해 공개되는 것은 실제로 있는 문서 자체가 아니라 그 중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허위정보는 아니지만 정보를 청구한 사람이 쉽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쪽에서는 오해를 초래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에 의해 시정될 수 있겠지만, 세밀한 생략이나 특히 전문적인 사안인 경우에 그 중요성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남긴다.¹⁴⁾

12) Id.

13) Id.

14) 오향녕, 위의 글, 115-116면

세 번째 문제점은 정보 이용에 부과된 수수료가 각급 기관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공개된 정보의 질이나 그것을 보유한 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시민에 대해 막대한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본래 공적 영역에 있는 정보를 ‘파는’ 발상이 일부 관청에서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¹⁵⁾

네 번째 문제점은 이 내부규칙이 상업 분야에서는 거의 무력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내부규칙이 허가를 얻지 않은 공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3자의 경쟁적 지위를 해치는 영업상의 비밀이나 지적 재산을 포함한 정보를 비공개로 했고, 정부가 체결한 계약 및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다.¹⁶⁾

다섯 번째는 ‘공공의 이익’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1995년 6월에 각 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 또는 의외에 정보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안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개정은 정보공개에서 기대되는 일반적 효과와 배치되게 마련이다.¹⁷⁾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보 차원에서 일반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창설하는 법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될 수 있겠지만 정부 정보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칙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다. 미국과 같은 정보자유법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의 내용에 따라서는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보공개제도는 2000년에 제정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Bill)으로 한번의 큰 획기적 전환을 맞는다. 다음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또 다른 측면인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¹⁸⁾

15) 오항녕, 위의 글, 116면

16) Id.

17) Id.

18) Id.

5. 빅데이터-현대정보사회의 환경

영국의 정보사회화는 그동안 이루어진 세계각국의 전자정부구축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통신(IoT)의 지속되고 있는 발전에 힘입어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관련하여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발굴·분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로서 빅데이터가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국가나 정부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분석을 통해 미래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분석이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데이터의 통합과 마이닝(Mining)을 통해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환경하에서 실시간을 생성되고 있는 무한의 다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에 이르러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6. 개인정보의 보호

영국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법은 두말할 것 없이 1984년 자료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이다. 이 법률이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개인자료의 자동처리와 관련된 개인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조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do automatic proceessing of personal data)」과 「유럽인권조약(Council of Eurpo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제8조 (프라이버시의 권리)에 그 기원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입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자료보호법의 집행기관으로 설치된 자료보호등록관은 취임설명에서 “우리는 1984년 자료보호법 실시에 즈음하여,

19) 정준현,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10월 31일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적 국제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사생활의 존중, 특히 그 정보의 프라이버시의 존중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²⁰⁾

7. 1984년 자료 보호법

자료보호법 제정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개인자료의 자동화 처리에 수반하여 우려되는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즉 이 법의 목적은 컴퓨터에 의해 야기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실체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둘째, 영국 자료처리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내법의 정비에 의해 영국은 앞선 「자료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조약」을 비준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자료보호법을 마련한 국가는 법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게 자료 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영국내의 국제 기업과 해외 고객을 가진 영국 컴퓨터 회사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료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²¹⁾

정부 입법안의 요점은, 첫째, 자료보호를 말을 관청이 아니라, 자료보호 등록관을 정해 그 임무를 자료보호등록부의 유지와 관리 및 그를 통한 자료보호원칙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둘째, 입법효과를 수반하는 ‘운용 규칙’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었다. 의미있는 간소화라고 할 수 있는데, 등록관으로 개인을 임명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유연성 있는 자료보호원칙에 대한 감독수단이라고 판단된다.²²⁾

자료보호법(안)은 1982년 12월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 있다가 1983년 5월 의회가 해산되면서 안건 자체가 폐기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수정안이 상정되어 1984년 7월 공포되었다. 이 법에는 대상영역과 등록, 자료주체의 권리인 정보접근법, 손해배상청구권, 수정맡소청구권, 등록관에

20) 오항녕, 위의 글, 116-117면

21) 오항녕, 위의 글, 117면

22) Id.

대한 고충진정권, 자료보호등록관, 자료보호심판소, 적용제의 조항 등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²³⁾

84년 자료보호법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자료 때문에 입법화 되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통상 종이 파일로 관리되거나 처리되는 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컴퓨터처리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살아있는 개인에게 관련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²⁴⁾

8. EU 자료보호 지침

1984년 자료보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1994년 형사법과 공공질서법 제161조에 대한 새로운 자료 보호범죄가 신설되었고 1990년 의료기록 접근법 등에 의한 개인의 접근권 확대가 시도되었다. EU자료보호 지침이 이러한 발전의 외적 요인으로 검토할 만한 것이다. 1990년 9월에 EC 자료보호에 관한 일반적 지침 초안을 공표하고, 유럽의회의 검토를 거쳐 1992년 10월에 개정초안을 공표했다. 그 후 EU각료이사회는 1995년 2월 20일 의회에서 자료보호에 관한 ‘공통의 입장’(Common Position)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공동결의 절차를 밟아 유럽의회에 넘겼다. 의회는 같은 해 6월 15일에 이것을 의결했다. 그 후 EU자료보호지침이 10월24일에 유럽의회 및 EU이사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공식 명칭은 ‘개인자료의 처리에 관한 보호 및 관련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이다. 제11차 연차보고서의 등록관의 의견을 참고하면 자료보호법이 EU지침의 성립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가 정리된다. 제11차 연차보고서에 게재되었던 등록관의 의견은 ‘공통의 입장’에 대한 것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성립한 지침은 ‘공동의 입장’을 약간 수정한 것이었다.²⁵⁾

23) 오항녕, 위의 글, 117-118면

24) 오항녕, 위의 글, 118면

25) Id.

그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지침과 84년법의 목적상 차이가 있다. 지침 제1조 1항에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개인자료의 관료화 관료하여 자연인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할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료등록관은 이 규정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에 1984년 법에는 명시적인 프라이버시권 보호 규정이 없었다. 향후에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²⁶⁾

둘째, 기본권의 균형과 관련해 1984년법은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지만, EU지침은 특별히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어 개인의 권리에 동의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독일법에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영향이라는 지적도 있다.²⁷⁾

셋째,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수동처리정보가 95년 지침의 대상이 되었다. 당초에 영국정부는 지침에 수동처리 정보를 포함시키는 데에 반대했지만, 자료보호등록관은 이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지침의 내용이 애매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²⁸⁾

9. 최근의 입법동향

자료보호에 관해 영국정부는 1995년 EU지침에 따라 1998년 자료보호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6년 자료보호법은 7월 16일 여왕의 재기를 얻었는데, 이에 따라 그 전까지는 1984년법이 효력을 가졌지만, 이후로는 구법은 폐기되고 신법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²⁹⁾

26) 오항녕, 위의 글, 118-119면

27) 오항녕, 위의 글, 119면

28) Id.

29) Id.

기업이나 기관은 1998년법의 요구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1998년법의 부칙에 따라 개인처리 자료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되었다. 이를 처리가 완전히 새로운 법의 요구에 따를 때, 자료를 통제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새 법의 원리가 매우 일반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여러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영국 정부측의 입장이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자동화 처리 정보에 대한 보호법이 정비되고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다.³⁰⁾

영국정부는 정보자유법의 제정을 영국 정치의 현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개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였다. 법제 개혁 계획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에게 더욱 많은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법제 개혁의 목적이었다.³¹⁾

정보자유법의 가장 큰 효과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 법은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급속히 변화시켰다.³²⁾

영국정부는 1977년 12월 「국민의 알 권리(Your Right to Know)」라는 백서에서 정보자유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공표하였다. 1988년 여름에 내무성은 내각으로부터 인권이나 자료보호 같은 다른 법률적 검토를 포함한 정보자유법의 입법을 위임받았었다. 이후에 내무성은 법안을 만들어 1999년 5월에 공표하였다.³³⁾

이 정보자유법은 청구된 정보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이용권을 포함한 근원적인 조치이며 강력한 강제력을 가진 제도라 할 수 있었다. 물론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처럼 보호받아야 할 사안도 있다. 정부

30) Id.

31) 오항녕, 위의 글, 119-120면

32) 오항녕, 위의 글, 120면

33) Id.

자신도 내부적 고려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하다. 이 법률은 공식적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과 비밀 해제가 공공의 이해에 반하는 비밀문서를 보안하는 방향이라는 두 방향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결정적으로 공개와 개방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법률의 주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³⁴⁾

첫째,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공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 이용권은 일정한 조건과 예외에 따른다. 둘째, 그 정보가 법률 아래서는 예외일지라도 공공 기관에 청구가 있으면 공공 이해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셋째, 정보의 출간을 위한 절차를 갖출 의무가 공공 기관에 부여되었다. 넷째, 정보 위원회의 새 사무실과 새 정보재판소는 새로 창출된 강화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³⁵⁾

아주 극소수의 공공관서만이 그 업무의 성격상 이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되었다. 국가안보국(the Security Service, 비밀정보국(the Secret Intelligence Service), 정부통신본부(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특수부대(the Special Forces)는 그들의 작전이나 업무가 정보자유법에 종속될 경우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 부처, 보건기관, 지방행정기관, 교육기관, 경찰 등 법안에 열거되었던 모든 관청이 이 법에 망라된다.³⁶⁾

이 법은 정보를 이용하는 데 대한 어떠한 형식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용자가 할 것은 원하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다. 이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신청서는 해당 기관이 정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이 그 이용자의 개인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시 생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상식적 요구에 가능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34) Id.

35) Id.

36) 오항녕, 위의 글, 120-121면

위해 비용이 들겠지만, 이것은 정보보호법 하의 10€ 정도와 비슷할 것이다.³⁷⁾

중요한 것은 역사적 기록에 적용되던 30년 이후 공개 규칙이 새 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영국정보는 비교적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했고, 기록이 30년이 지난 뒤에는 어떤 획기적인 조처가 있어야 겠다고 결론내렸다. 그래서 이번 법에서는 기록물이 보류될 수도 있다는 약간의 여지를 남겼을 뿐, 30년 이후 공개 규칙에 어떤 예외조항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기록이 30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공개가 보류되기는 어렵게 되었고, 옛 기록에 대해 더욱 자유로운 이용 제도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³⁸⁾

또한 기록물은 자동적으로 30년간 비공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전제도 없었다. 정보자유법은 정보의 공개라는 법률적 추정을 가능케 했다. 공공 기관에 의해 더욱 많은 현재 사용되는 기록들이 풀려야하고, 오직 민감한 기록만이 30년이 지날 때까지 공개가 보류되고 이 시점 이후로도 공개가 보류된다면 그것은 가장 민감한 기록 이어야 했다.³⁹⁾

그러면 이 정보공개법이 발효되면 1998년 자료보호법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인가를 보자. 1998년 자료보호법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의 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으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OI법은 98년 자료보호법의 기록당사자의 정보 이용권이나 공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폭넓은 범위에 걸친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⁴⁰⁾

지금까지 영국의 정보공개제도의 발달과 현황에 대해 개인자료보호법의 발달과 비교하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법조항의

37) 오향녕, 위의 글, 121면

38) Id.

39) Id.

40) Id.

변천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나, 영국의 정보공개 사정에 대한 개괄적 흐름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자세한 논의는 피하였다. 이에 덧붙여 영국 정보공개제도를 가늠할 정보자유법(FOI)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⁴¹⁾

제 3 절 영국에서 알권리의 발전과 정보공개

영국에서 정보공개 제도의 본격적인 수립은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후로부터 이루어졌다. 1992년부터 노동당의 ‘로이 해터슬리’(Roy Hattersley)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첫 입법사례로 정보자유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반해 보수당은 정보자유법과 같은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에는 여전히 반대했다. 비록 1992년의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이겼지만 정보공개와 관련한 옴부즈맨 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 여론은 정보공개 제도의 확대를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의 총선에서 신노동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정보자유법 도입에 대한 찬반이 1997년 총선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터였다. 1997년 총선에서 영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정보공개법 도입에 찬성했기 때문에 신노동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어둡고 폐쇄적인 정부가 아니라 밝고 투명한 정부를 원하고 있었고 신노동당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⁴²⁾

그러나 처음에는 신노동당 정부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권의 시작과 함께 정보자유법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 같더니 한 걸음 물러서서 백서 단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 후에는 그나마 7월에 발간하기로 했던 백서 발간도 12월로 미루어지고 그

41) 오항녕, 위의 글, 121-122면

42) 오항녕, 위의 글, 145-146면

다음 해에 초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정보자유법에 대한 입법 일정도 흐지부지 되려는 기미를 보였다. 정부를 비판하던 야당 시절과는 달리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정보공개법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1970년대부터 정보공개법 도입을 이끌어온 몇몇 운동 단체와 ‘가디언’(The Guardian) 등 일부 언론이 신노동당 정부와 영국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의회 소관위원회의 권고, 의원들의 집단행동 등이 이어지면서 정보자유법 제정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압박이 신노동당 정부에 가해졌다. 그러자 신노동당 정부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늦은 1999년에 가서야 정보자유법 초안을 발표했고 1년 뒤인 2000년 11월에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보자유법 입법을 완료했다.⁴³⁾

정보자유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간회사들이 주요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거나 기밀 엄수조항을 계약조건으로 삽입시키는 일이 많았다. 영국 정보공개제도의 핵심이 되는 현행 정보자유법은 주요국들의 도입 시기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2000년에 제정되었고, 2005년부터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1970년대 초부터 이미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보자유법의 입법화가 지체된 것은 영국 정부 특유의 비밀주의적 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집권 세력으로 군림하던 보수당 정부시절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는 동안 다양한 경로를 거쳐 정보공개제도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보수당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해당 법안은 발의와 좌절, 표류를 거듭하였다.⁴⁴⁾

1980년대부터 정보공개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실행규칙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의회 옴부즈맨이 이를 감독

43) 오항녕, 위의 글, 146면-147면

44) 정준희, “영국의 정보자유법과 언론”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 2008년 상권(통권 제23호),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2008년 7월 25일, 15면

하는 기초적인 형태의 시스템이 한동안 영국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초기를 이끌었다. 또한 1990년대 초반 들어서 유럽연합 차원의 입법 권고에 부응하여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규칙이 수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의 입법화는 보수당으로부터 노동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신노동당 정부는 정보자유법의 즉각적 도입과 시행을 공약으로 걸고 선출되었다.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열의가 꺼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사회·정치적인 압박이 계속된 후에야 비로소 입법화와 시행에까지 이르는 기나긴 과정이 끝났다. 2000년 정보공개법은 10만 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및 공적 서비스와 민간 업체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폭넓은 문헌과 정보를 포괄하여 소급적용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이 확보되어 있다. 정보공개 의무에서 제외되는 범주는 완전면제와 제한적 면제로 나뉜다. 공익성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기밀로 분류되는 전자는 국익에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후자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공익성을 떠는가를 따지면서 정보 당사자의 권리에 상당한 불이익이 끼쳐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서면이나 이메일로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원과 목적을 알릴 의무는 없다. 공공기관에 의해 정보공개가 거부되었을 때 이의신청 과정을 거칠 수 있다. 1차 이의신청은 해당 기관, 2차 이의신청은 정보판무관, 3차 이의신청을 위해 정보심판소를 각각 거친다. 3차 이의신청에서 신청자와 공공기관 공히 불복심판을 요청할 수 있고 여기서 내려진 결론이 최종적이다. 내각에 속한 장관의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한 거부 권한을 갖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만 행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용 사례는 없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환경정보공개규칙 등이 있다. 영국 언론은 정보 자유법의 수립과 시행 과정을 이끌어온 핵심 주체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해당 법률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는 지지대 역할도 수행하였다.

정보자유법의 ‘시의성’ 문제 때문에, 매일의 뉴스보도 보다는 주로 시간적 제약이 적은 탐사보도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정보 공개제도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시행 초기단계를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자유법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보 자유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 의한 조직적 저항, 정보판무 관실의 과도한 중립성과 판단 지체 등이 정보자유법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⁴⁵⁾

제 4 절 영국에서 빅데이터 발전과 정보공개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통신(IoT)에 기반을 둔 오늘 날의 고도정보 사회에서는 정보 주체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저장·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나 정보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가치를 전제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치 창출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입법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보편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 거대한 양의 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는 빅데이터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데이터상의 법적 문제는 플랫폼 인프라로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아키텍쳐의 단계를 거친 데이터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단계에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비밀권, 특허권, 상표권 및 계약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의 단계를 거쳐 데이터 규율로서 일반적인 데이터 보호의 영역에 속하는 프라이버시보호 및 통신 비밀의 보호의 문제와 부문별 영역에 속하는 금융 서비스와 의료, 항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⁴⁶⁾

45) 정준희, 위의 글, 15면

46) 정준현,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10월 31일, 73면.

요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컴퓨터의 강력한 하드웨어를 거쳐 일정한 유형별로 누적되게 되고,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축적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일정한 처리과정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분석자는 가치가 있는 특정한 유형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별개의 데이터 세트간 새로운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평가할 수도 있게 되는 반면, 개인에 대한 인위적인 유형화 등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확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또한 안게 되는 것이다.⁴⁷⁾

다음에서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적 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빅데이터가 갖는 순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관련 법적 문제점을 고찰해본다.⁴⁸⁾

1. 법과 빅데이터를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은 큰 사회적·국가적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일반경제 또는 사회적 트렌드에 대해 가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제공된 많은 양의 정보에 대한 분석은 온라인 작업자가 온라인 사용자들의 선호와 행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특정한 행동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생활패턴이나 현재 발생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분이나 마음 상태와 같은 특정한 정보까지도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⁴⁹⁾

47) 정준현, 위의 글, 73-74면

48) 정준현, 위의 글, 74면

49) 정준현, 위의 글, 75면

상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와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한 광고를 낼 수 있게 함으로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반면에 서비스 제공자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개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개인화 작업 내지 개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즉, 개인별 행동패턴 데이터의 이용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⁵⁰⁾

현재 유럽은 개인정보와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규제함으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데이터보호지침”(95/46/EC Directive)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 지침은 현재 EU의회를 통과해 이사회에 계류 중에 있는 유럽 전역에 대해 직접 적용되는(지침과 달리 회원국가의 입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회원국 전체에 적용) “일반데이터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으로 대체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지침” (2009/136/EC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e : ePrivacy Directive)은 종전의 지침(2002/58/EC ePrivacy Directive)보다 전자통신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⁵¹⁾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8) 제7조는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마찬가지로 사전 동의(opt-in)원칙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동법 제4장(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르면 공공질서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사회 또는 개인의 일반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데이터 피용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개인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지침’(ePrivacy Directive) 제5조에

50) Id.

51) 정준현, 위의 글, 75-76면

따르면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이러한 처리가 피용자의 명시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데이터 프로세싱의 방법과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받은 데이터 피용자가 받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

2. 법과 개인정보 유출

앞에서 살펴본 사전동의 원칙 등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이를 접근 권한이 제한된 커뮤니티에 유포함으로서 그들의 개인 데이터를 온라인상으로 공유·유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경향은 공공부문의 정보공개의 성과로 나타난 ‘공개 데이터의 이동’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⁵³⁾

즉,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공개되는 데이터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 분석과 형상화를 위한 수단들이 기업의 상업적 목적과 결합되면서 기업의 개인 수요분석 영역으로 확대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가 거대한 데이터 세트가 되고 이를 수집하고 집합시켜 데이터 간에 더 나은 패턴과 연관관계를 식별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⁵⁴⁾

최근에는 이에 더 나아가 자기측정(QS, qualified self)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반면에, 한 사람의 개인정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기

52) 정준현, 위의 글, 76면

53) 정준현, 위의 글, 76면

54) 정준현, 위의 글, 77면

위해 통계적 수단과 복잡한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려는 경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⁵⁵⁾

이러한 경향은 개인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얻으려는 사용자로부터 약관으로 정해 놓은 서비스 조건의 동의를 받아 냄으로써 이런 충돌의 가능성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⁵⁶⁾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으로 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적인 관점에서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위험의 인수를 정당화할 정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충분한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⁷⁾

설사 사용자들이 사전에 약관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던 데이터 세트라고 하더라도 이들 데이터 세트에 대한 단순한 집합에 별 다른 약관이 없이 단순 동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연역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동의는 사용자의 인식범위를 초과한 동의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별개의 소스로부터 모인 다수 데이터 세트의 집합에 기반한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용자들 혹은 그들이 가입하는 커뮤니티에 따라 별개의 온라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55) Id.

56) Id.

57) 같은 취지, 정준현, 앞의 글, 129면

58) 정준현, 위의 글, 77-78면

의명성 또는 가명성의 권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해 공통의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별개의 사용자 프로파일을 통해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쉬운 반면에, 사용자들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가 공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유출되어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⁵⁹⁾

이런 현상은 의도적으로 개인 데이터 보호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명으로’ 처리된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법률이 개인 데이터 처리만을 규정하는 경우에 실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과 관계된 데이터 또는 그들의 특징을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능한 모든 공공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개인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나 데이터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많은 그 밖의 데이터나 정보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 이외에 “해당 개인에 대해 표현된 의견이나 데이터 관리자의 모든 지시사항, 그 사람과 관계있는 모든 타인의 의견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⁰⁾

또한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제4조의 ‘보호원칙’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사람과 관련된 정보에 적용되어야 되는 반면에, 해당 개인이 식별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자의 합리적인 고려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명성을 가진 데이터 세트의 경우 각각의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식별하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지만 특정한 개인의 경우 다중적 데이터 소스로부터 축적된 정보들을 다시 재식별함으로써 소위 ‘추론 공격’이라 일컬어지는 새로운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59) 정준현, 위의 글, 78면

60) Id.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인구에 대한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별, 생일, 우편 번호만으로도 63%가 넘은 사람들을 선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거대 온라인 작업자들은 사용자들의 흥미나 선호,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자 자신들보다 더 잘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금융 부문을 보면,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이나 담보를 주는 것을 결정할 때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정보에 따라 수행된 연구는 다른 목적에 적용되거나 사용되곤 한다. 상점의 경우 고객이 임신하였는지에 여부 등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⁶¹⁾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그들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추후 빅데이터 분석의 수단이 되는 데이터 수집(또는 추론작업)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자들은 데이터 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이런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⁶²⁾

이런 측면에서 동의를 위한 고지는 필수적인 사전요건이 된다.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토대로 하는 고지와 동의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은, 이런 데이터가 처리되기 위한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같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보호법” 제4조제1항 및 “부칙 I”, “제1장 데이터보호원칙”, “2”에 의하면, 개인데이터는 하나 이상의 명시된 적법한 목적으로만 취득될 수 있고,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빅데이터의 변화적인 속성에도 합치 되어야 하는 것이다.⁶³⁾

61) 정준현, 위의 글, 78-79면

62) 정준현, 위의 글, 79면

63) Id.

빅데이터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통해 해당 개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연결되거나 추론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정보주체인 사용자에게 통지되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추출되는 가치의 대부분은 고지나 동의가 행해진 시점에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창출될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는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처리 결과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주체는 빅데이터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쉽지 않다.⁶⁴⁾

더욱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때 통계 도구들은 더욱 복잡해지며 추론 알고리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정보 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이 늘 제기된다.⁶⁵⁾ 이런 측면에서 ‘개인데이터 보호법’은 시민에 대해 제3자에 의해 소유되는 모든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실제 사용까지도 고지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⁶⁶⁾ 또한 이런 사용에 대해 반대할 기회를 제공하고,⁶⁷⁾ 사용자가 인지하기에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기회까지 제공한다.⁶⁸⁾⁶⁹⁾

빅데이터 분석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대부분은 온라인 작업자들이 추가적인 정보를⁷⁰⁾ 추론하여 이용한다는 사실을

64) 정준현, 위의 글, 79-80면

65) 예컨대, 구글의 독감예측이 최근 2년간 틀린 경우를 두고 “빅데이터의 배신”이라고도 한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52119

66)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67)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68)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및 “부칙 I”, “제2장 제1장의 원칙에 대한 해석”, “제4원칙”

69) 정준현, 앞의 글, 80면

70) 예를 들어, 개인 선호도, 취미, 가족 구성, 의료 기록, 재정 상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적절하게 고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이러한 추론과정을 알지 못해 처리에 반대할 수 없으며 필요한 정보의 수정을 위한 요청도 할 수 없게 된다.⁷¹⁾

3. 사회질서와 빅데이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 추천시스템 등 고객에게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복잡한 매커니즘을 넘어서, 미래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선호에 대한 정보의 연역이나 추론도 빅데이터 분석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 양의 증가와 ‘스몰데이터’(Small data)에 의한 예측보정 기술에 의거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⁷²⁾

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들은 발달된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통계상관관계 알고리즘을 이용해 한 고객이 최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 것과 같은 정보로 고객의 사생활까지도 알 수 있다. 어떤 고객이 이혼에 임박해 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터넷 사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서 사용자의 기분과 성격, 현재의 마음 상태와 심지어는 우울증의 특정 징후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고객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에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만을 장려하거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견제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⁷³⁾

유럽연합의 ‘데이터보호 지침’ 제3조제2항과 제7조(e), 영국의 ‘수사권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과 미국의 ‘애국자법’ · ‘국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에서는

71) 정준현, 앞의 글, 80면

72) 정준현, 위의 글, 81면

73) 정준현, 위의 글, 81-82면

법에 따라 국가안보의 목적과 사회의 합리적 이익 보전을 위해서만 정부가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존재하는 개인에 대해 온라인 작업자에게 해당 개인 데이터와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한 개인의 보호나 사회적 정의를 위한 정보 공개 기재는 발견할 수 없다. 즉, 온라인 작업자들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 또는 추론 분석을 통해 특정한 고객에게 임박한 위협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인정하는 법은 영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⁷⁴⁾

예를 들어, 건강정보를 추적하는 서비스 작업자들은 자신의 고객들 중 특정인의 식생활 습관으로 보아 당뇨병을 일으킬 위험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 온라인 작업자에 대해 해당 정보를 의사에게 전송 할 권리 내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혹은 온라인 작업자가 우울증 상태에 있거나 자살을 범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양상을 보이는 고객을 식별하게 된 경우 관련 보호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결단은 아직 없는 것이다.⁷⁵⁾

다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논문인 “Big Data - Legal Rights and Obligations”(빅데이터 - 법적 권리들과 의무들)를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개별적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통신(IoT) 환경 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법적 규율은 ‘방안의 코끼리’로서 여전히 많은 미결의 숙제를 남긴다. 법적으로 미숙한 영역으로 데이터를 법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데이터의 법적 권리’라기 보다는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 점에서 데이터(data)내지 정보(information)는 저작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편집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

74) 정준현, 위의 글, 82면

75) Id.

또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비밀성 보장을 강제하는 양질의 비밀성 보장이나 상표 또는 권리의 행사와 같은 법률적 환경을 만들어낸다.⁷⁶⁾

저작권, 데이터 베이스권, 비밀성, 상표와 같은 각각의 권리들은 대물적 권리로서 자체의 법정요건에 따라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 지적재산권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법적 분석은 처음부터 다층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 데이터 베이스를 위한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는 상호배타적이 된다. 한편, 전 세계의 데이터 산업이 점증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석적 복합성은 가중되고, 지적재산권은 국내적 권리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법정요건은 국내에서의 “권리 대 권리”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간의 권리”로 확산될 수 있다.⁷⁷⁾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계층적 속성은 오늘날 영국법에만 한정되지 않고 불명확한 국가 간의 법적 환경과 더불어 기업의 세계에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계약을 유일한 탈출구로 선택하도록 하는 분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계약은 배제할 수 없는 경쟁법과 다른 명시적 규칙과 공공정책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만 강제가 가능한 대인적 권리를 부여할 뿐이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물적 권리로 변환되지는 않는다. 기술적으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과 등록상표 등의 지적 재산권은 보통법(common law)이 아닌 성문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형평법(equity)의 산물인 ‘신뢰에 따라 시행할 권리’(The right to enforce a confidence)는 계약 당사자 이외에도 그 신뢰의 확장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적 재산권과 유사하다.⁷⁸⁾

76) 정준현, 위의 글, 82-83면

77) 정준현, 위의 글, 83-84면

78) 정준현, 위의 글, 84면

따라서 대물적 권리로서 데이터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비춰지는 반면에, 그 범위가 불명확하며 강제력을 발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게 든다는 점에서는 단정이 되고 있다. 반면에 대인적 권리로서 계약권은 강력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계약 당사자들 간에만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⁷⁹⁾

4. 데이터와 비밀성

영국의 법령은 비밀성 보호에 관련해 데이터와 관련된 환경에서의 권리구제 수단을 규율하고 있다. 전시된 정보를 보호하는 정식의 권리 구제수단인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과는 다르게, 비밀성에 관한 법을 통해 정보의 실질성 그 자체를 보호하고 있다. “Albert(Prince) 대 Strange” 사건은 “집합적 형태로서의 정보구조가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저를 이루고 있는 정보가 일반인의 영역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집합된 것으로서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성에 관한 법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무선(Wireline) 사건의 경우, 거래된 정보가 본질적으로 일반인의 영역에 있었지만 영국 법원은 비밀성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은 집합적 형태를 갖춘 정보의 구조라는 입장을 지지하였다.⁸⁰⁾

그러면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실제적 문제로서 직관적인 생각과는 다소 달리 일반적으로 비밀성은 계약 바깥에서 가장 보호된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직의 계약시스템과 웹사이트 및 그 밖의 고지에 명시하는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으로 정한 비밀

79) Id.

80) 정준현, 위의 글, 94면

정보의 정의를 충분히 넓게 검토하여 컴퓨터화된 데이터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하게 된다.⁸¹⁾

개인의 거래보고서에 담겨 있는 거래데이터와 같은 집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와 그 밖의 고지 그리고 계약 정의와 조건 등에 규정할 비밀준수사항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만약, 모든 데이터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역사적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더욱 넓게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간의 데이터’와 ‘실시간에 근접한 데이터’(near real-time dat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⁸²⁾

81) 정준현, 위의 글, 94-95면

82) Id.

제 3 장 정보공개법 제

제 1 절 서 설

혁명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량을 선호하는 전통을 가진 영국답게 영국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정보 공개제도 마련의 본격적 시작을 알린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한참 늦은 2000년 11월에야 영국 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 법이 정식으로 발효한 것은 다시 그로부터 5년 후인 2005년 1월부터였다.⁸³⁾ 정보공개 분야에서 영국은 제도적 발전이 더딘 편인 것이다.

제 2 절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I. 정보 공개의 대상

1. 공개의 대상

정보자유법의 적용대상은 상당히 넓은 편이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한다. 심지어 정보자유법 제정 이전의 정보에 대해서도 이 법이 소급적용된다. 법무 장관(Lord Chancellor)이 공공기관 목록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현재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수는 약 10만개 정도에 이른다. 그 적용 범주는 내무부(Home Office),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등의 중앙정부부서, 조직 체계에 포함되는 모든 종류의 제1차 진료의, 치과, 약국 및 기타 보건기구 등의 국민의료시스템, 국공립학교, 대학

83) 정준희, 앞의 글, 142면

및 기타 교육기관, 오프콤(Ofcom) 등 규제기관, 군청이나 구청 이상의 모든 지역 관청 등 지역정부, 환경청에서 공기업에 이르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이른다.⁸⁴⁾

정보자유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통상적 의미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구나 개인들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론중재위원회(Press Complaints)와 같은 자율적 구제기관이 포함된다. 공공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은 민간 회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⁸⁵⁾

특히 정부 조달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면 그 내용, 경쟁 입찰가, 가격 조선, 관련 인력, 사업 수행 결과 등의 방대한 자료들이 전면적으로 공개된다. 사업기밀에 관련된 정보도 해당 회사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정보자유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간회사들이 주요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하거나 기밀 엄수조항을 계약조건으로 삽입시키는 일이 많았던 관행도 바뀌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비 조항 삽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미 삽입된 기밀처리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⁸⁶⁾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능동적 대체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렇듯 선제적인 정보공개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공표정책’(Publication Scheme)이다. 이 공표정책의 핵심내용은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집행위원회 의제와 회의록, 회계, 재정적 목표, 조직구성 정보, 의사결정 과정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기관

84) 정준희, 위의 글, 147-148면

85) M. Turle & V. Horden, Introduction to Freedom of Information Act,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Vol.21, p.416

86) 정준희, 앞의 글, 149면

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특유의 비밀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또한 정보공개 신청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정보공개 요구까지 쇄도하는 것을 예방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0년 정보자유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연차보고서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게 되었으며 웹사이트를 활용해 당해 공공기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국민적 이해를 높이려는 관행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⁸⁷⁾

2. 공개면제의 대상

정보공개 면제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완전 면제’(absolute exemption) 대상과 ‘제한적 면제’(qualified exemption) 대상이 그것이다. 완전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그 정보를 공익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계 없이 공개 거부할 수 있다. 제한적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개나 비공개 결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가를 고려하는 ‘공익성 심사’를 거치며 ‘편견 심사’(prejudice test)나 ‘위해성 심사’(harm test)가 요구되기도 한다. 이 때 ‘편견’이라는 용어는 제한적 면제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특면에서 법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원래의 정부 백서에서는 ‘실질적 손해’(substantial harm)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면제의 대상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2000년 정보자유법의 입법과정을 주도한 당시 내무부 장관 ‘잭 스트로’(Jack Straw)는 ‘편견’이라는 용어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거꾸로 면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되었다. 완전 면제의 8가지 대상과 제한적 면제의 17가지 대상에 대해 다음에서 알아본다.⁸⁸⁾

87) 정준희, 위의 글, 152-153면

88) B. Worthy, The Futur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Political Quarterly*, Vol. 79-1, 2008, p.107

(1) 완전면제 대상

첫째, 정보자유법 제21조에 규정된 다른 경로를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정보다.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면제 대상에 포함된 정보다. 주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연차보고서 등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보자유법 제23조에 규정된 대내첩보국(M15), 해외첩보국(M16), 정부보안사령부(GCHQ) 등의 국가안보기구가 보유한 정보이다.

셋째, 정보자유법 제32조에 규정된 법정기록이다. 법정기록의 공개는 법원 자신의 판단에 의해 공개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된다.

넷째, 정보자유법 제34조에 규정된 의회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이다. 의회특권 개념에 대한 엄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모호하게 처리된 영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사 양원의 각종 절차에 관련된 정보 가운데, 의회 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등이 이 특권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권 범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정보판무관’(Information Commissioner)의 역할이다.

다섯째, 정보자유법 제36조에 규정된 공무의 효과적 수행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다. 상하 양원 의회에만 해당한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공익성 심사를 수행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자유법 제40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는 통상적으로 해당 정보의 당사자에게만 공개될 수 있다.

일곱째, 정보자유법 제41조에 규정된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된 정보이다. 주로 민간 공급자들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 영역을 사법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정보자유법 제44조에 규정된 기타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이다. 1998년 인권법 제6조, 1992년 지방정부재정법 제21조, 유럽 연합 관련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⁸⁹⁾

(2) 제한적 면제 대상

제한적 면제 대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불이익 심사에 의한 면제’와 ‘분류에 의한 면제’(class exemption)가 그것이다. ‘불이익 심사에 의한 면제’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당사자의 이익 침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 결과 당해 정보를 공개해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미 공익성 심사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므로 이를 추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분류에 의한 면제’는 불이익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공기성 심사만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불이익 심사에 의한 면제

정보자유법 제26조의 국방, 제27조의 국제관계, 제28조의 국내관계로서 영국 중앙정부와 각 민족자치단위 사이의 관계, 제29조의 국가의 경제적 이익, 제31조의 법집행으로 범죄 혐의자 수사 등에 관련된 정보, 제33조의 감사기능으로 다른 기구들의 활동을 감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에 적용되는 것, 제36조의 공무의 효과적 수행, 제38조의 보건과 안전, 제43조의 사업상의 이익이 불이익 심사에 의한 면제의 대상이다.

2) 분류에 의한 면제

제22조의 공표 예정된 정보, 제24조의 국가안보로서 위에서 살펴본 완전면제에 해당하는 첨보기구에 의한 정보 이외의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제30조의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 내용으로서 사법적 고사권과

89) 정준희, 앞의 글, 153-154면

고발권을 가진 경찰, 세무서 등이 습득한 정보, 제35조의 정부 정책 형성, 제37조의 국왕과의 의사소통, 제39조의 환경정보로서 ‘환경정보 공개규칙’(EIR,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에 의해 별도로 관리 되는 것, 제40조의 개인정보가 분류에 의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제40조의 개인정보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완전면제 범주에 해당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공익성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전문가의 해석에 의존한다.⁹⁰⁾

II.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 요청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된 정보가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정보의 보유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공개 신청서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정보공개 신청자의 실명 등을 초함한 신원 확인은 불허되며 정보공개 신청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물을 수 없다.⁹¹⁾

정보공개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업무방해의 성격이 명백한 요청이나 지나치게 고비용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여기서 ‘합리적인’(reasonable) 범위라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법무장관이 제시하는 실행지침에 따르면 신청자가 원하는 정보가 불명확할

90) 정준희, 위의 글, 154-156면

91) 정준희, 위의 글, 150면

때 이에 대한 색인과 분류항목을 알려준다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비용 상한선을 제시해준다거나 하는 일이다. 이러한 도움을 제공했는데도 정보공개 신청자가 적절히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시킬 의무가 없다.⁹²⁾

정보공개가 거부되었을 때에 대비하여 여러 단계의 이의신청절차도 준비되어 있다. 최초의 이의신청을 해당 기관에 접수시킨다.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그에 대한 ‘내부심사’(internal review)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내려지게 될 지에 대해 신청자에게 통고해 주어야 한다. 내부심사는 공개 거부결정을 내린 당사자 이외의 직원에게 맡겨 가능한 한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진행된다. 내부심사는 통상 2주나 3주안에 마무리 짓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라서 공익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⁹³⁾

내부심사를 통해서도 애초의 공개 거부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자는 정보판무관에게 항소할 수 있다. 정보판무관실은 정보자유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로서, 정보자유법 이전에는 의회 옴부즈맨이 담당 하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의회 옴부즈맨의 경우 의원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었고 강제 권한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보판무관의 지위와 권한은 훨씬 독립적이고 강력하다. 2차 이의신청, 즉 정보공개 신청자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행권고’(practice recommendation)를 할 수 있는 정보판무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통고수단을 갖는다.⁹⁴⁾

첫째, ‘정보통고’(information notices)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분쟁중인 사안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수단이다. 둘째, ‘결정 통고’(decision notices)는 공공기관의 거부결정을 뒤집는 결정으로서,

92) Id.

93) 정준희, 위의 글, 150-151면

94) 정준희, 위의 글, 151면

일정기한 내에 일정 절차를 거쳐 당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한다.셋째, ‘강제집행통고’(enforcement notices)는 이미 내려진 결정통고를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내는 최고장이다. 만약 관련 기관이 이런 통고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보판무관은 그 기관을 고등법원(Hight Court)에 제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은 당해 기관에 대해 법정모욕죄를 선고할 수 있다.⁹⁵⁾

공공기관이나 정보공개 신청자가 정보판무관이 내린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3차 이의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다. 최종 쟁송단계에 해당하는 3차 이의신청을 다루는 기구는 ‘정보공개심판소’(Information Tribunal)이다. 이 정보공개심판소는 정보자유법 제정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심판소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 정보공개심판소의 결정은 최종 심급의 판단으로서 사법적 확정력을 갖는다. 그러나 정보판무관이나 정보공개심판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내각 장관만이 갖는 거부권이다. 거부권 행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당해 사안을 공익성 심사에 다시 회부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중앙정부나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지정된 일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만 적용된다. 병보판무관실에서는 모든 종류의 거부권 행사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차원의 엄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⁹⁶⁾

제 3 절 개인정보보호법

1998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DPA, Data Protection Act 1998)은 위에서 살펴본 2000년 정보자유법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법규이다.

95) 정준희, 위의 글, 151-152면

96) 정준희, 위의 글, 152면

1993년에 발표된 환경정보공개규칙과 2005년부터 효력을 갖게 된 정보자유법이 광범위한 공적 쟁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사적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다. 현행법은 1998년에 제정되었지만 최초의 관련 입법은 1984년에 만들어졌고, 이 때부터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⁹⁷⁾

제 4 절 환경정보공개규칙

정보자유법이 2000년이 되어서야 제정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환경정보공개규칙(EIR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은 상당히 일찍 1992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2000년 정보자유법의 취지와 구성에 조응하기 위해 2004년에 환경정보공개규칙 개정이 있었다.⁹⁸⁾

환경정보공개규칙이 정한 면제 대상은 정보자유법상의 면제 대상보다 더 좁은 범위를 갖고 있다. 정보자유법이 완전 면제와 제한적 면제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 환경정보공개규칙은 모든 면제를 조건부적인 것으로만 분류한다. 따라서 면제대상으로 분류되는 범주의 종류와 가지수가 적고, 면제결정이 내려지려면 훨씬 더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정보자유법상의 완전면제 범주처럼 자동적으로 면제대상으로 분류되는 정보는 없으며, 공익성 심사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은 당해 정보의 공개가 관련자에게 ‘적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adversely affect) 경우에 한정된다. 정보자유법이 규정하는 ‘편견’보다 훨씬 엄격하고 제한적인 규정인 것이다.⁹⁹⁾

97) 정준희, 위의 글, 156면

98) 정준희, 위의 글, 157면

99) 정준희, 위의 글, 158-159면

제 5 절 영국 정보공개법제의 특징

1. 영국 공공정보 개방정책의 현황

영국의 공공정보 개방정책은 2000년에 입법화되어 2005년에 발효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에도 영국의 정보공개 제도는 존재하였으나 이것은 1981년에 의결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이용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가맹국에 대한 권고 1981년 제19호4’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체정보 이용법(Local Government Access to Information Act 1985)과 개인파일 이용법(Access to Personal Files Act 1987)에 의한 것으로서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이용권만 인정하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차단되었다. 그러나 2005년 1월 1일 자로 ‘정보공개법’이 발효되자 모든 정부기관은 자체에서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이관된 정보를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대상을 특정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의 공공기관, 건강·의료 분야의 공적 기관, 경찰, 학교 및 교육기관, 중앙은행, 그 밖에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을 포함해서 정부가 주주인 국영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의 기관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인구 및 교통, 물가, 날씨,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해 왔고 이러한 정보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폐기되거나 방치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축적, 가공, 전달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공공정보가 지식정보의 원천으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연합(EU)은 2003년 11월에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고,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이를 국내 규범화하여 2005년 6월에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 2005)’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문의 자문과 규제를 전담하기 위한 ‘공공정보실(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OPSI)’을 설립했다. 공공정보실은 2006년 10월에 ‘영국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TNA)에 통합되었고 관장하던 공공정보의 재활용 및 출판에 대한 업무가 ‘영국국립기록보존소’(TNA)로 이관되게 되었다. 이외에도 ‘부처가 아닌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인 정보감독관실(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이 영국의 정보 개방정책에 대한 역할을 일부 담당한다.¹⁰⁰⁾

2007년 6월에 에드 마요와 톰 스타인버그가 『정보의 힘(The Power of Information: POI)』이라는 독립보고서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의 산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 보고서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 2008년에 리처드 알란을 의장으로 하는 ‘정보의 힘 프로젝트 조사단’(The Power of Information Task Force)을 구성했다. 2009년에 조사단은 6개 분야에 대한 25개의 권고안으로 이루어진 보고서(report)를 발표하였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의 권고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참여이사(Director of Digital Engagement)’ 직을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산하에 신설하고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인 팀 베너스리 경과 인공지능 전문가인 나이젤 쉐드볼트 경에게 위탁해 공공정보 공개를 위한 인터넷 포털인 ‘data.gov.uk’를 개발했다. 2010년 1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 사이트는 이제 6,000여개의 영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세트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창구로 역할을

100) 서원주, “영국의 공공정보 개방정책과 교육분야 사례” 「교육정책포럼」 제248호, 한국교육개발원, 2014년 2월, 31-32면

다하고 있으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팀 경과 나이젤 경은 2012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국 정보공개연구소(Open Data Institute: ODI)’를 세웠다.¹⁰¹⁾

2.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영국은 2005년 1월부터 정보공개법인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에 제정된 법으로 동법에 시행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에 있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 법 이외에도 1998년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과¹⁰²⁾ 환경에 관한 환경정보법(Environmental Information Act) 등이 있다. 정보자유법은 모든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국 국내의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인정하였으며, 1998년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과 1958년의 공적기록법(Public Records Act)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정보자유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 보유한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¹⁰³⁾

정보자유법은 정보공개의 대상 공공기관을 특정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 공공기관, 건강·의료관계의 공적기관, 경찰, 학교 및 교육관련기관, 영국은행(Bank of England) 및 그 밖에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가 주주인 국영기업이나 국영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민간기관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⁰⁴⁾

101) Id.

10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한다.

103) 세계법제정보센터, “정보공개법 시행: 영국”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UK/trend/1636?orderOption=OLD&astSeq=0>

104) Id.

아울러 정보자유법은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 적용 예외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any person)에 대해 당해 공공 기관이 요구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당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의 청구자가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공공 기관이 20일 이내에 대응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¹⁰⁵⁾

한편,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용 예외 조치에는 당해 정보가 정보자유법에서 정하는 적용예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적용예외’(Absolute Exemption)와 정보 자유법상 지정된 조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적용예외조치’(Qualified Exemp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절대적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정보는 특히 기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로서 정보자유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비밀유지의무를 갖는 정보로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 제공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말한다.¹⁰⁶⁾

다음으로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적용예외조치’(Qualified Exemption)에 해당하는 정보는 소위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공익심사’(public interest test)를 통한 검증을 통해 판단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공개하지 않는 것과 공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보다 이익인지를 형량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비밀(trade secret)

105) Id.

106) Id.

을 구성하는 정보, 그 정보공개에 의해 기업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시행된 정보공개법인 정보자유법은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인 적용예외규정을 두어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⁷⁾

3. 영국 오픈 데이터 정책의 추진 경과

영국에서 오픈데이터와 관련하여 도입된 주요 정책 관련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나누어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 11월에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제정하고 2005년 1월에 이법이 발효하였다. 동법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 정보를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¹⁰⁸⁾

2009년 12월에는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즉,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사회 혁신을 위해 데이터 및 공공 정보를 근본적으로 개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 정부 데이터에 대한 단일 온라인 접속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무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6월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부 투명성 제고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명성 어젠다’와 ‘투명성 원칙’을 발표했다. 투명성원칙에는 데이터 재이용과 자유로운 활용,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공개, 단일 포털을 통한 데이터 제공 등이 속한다.¹⁰⁹⁾

107) Id.

108) 한은영, “영국 오픈데이터 정착특징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23호 (통권 591호) 20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년 12월 16일, 2면

109) 한은영, 위의 글, 2면

내각사무국은 2012년 6월 ‘오픈데이터 백서(Open Data White Paper)’를 발표하고 오픈데이터에 관한 공공부문의 추진실적 및 정부 방침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데이터 엑세스 강화 및 오픈데이터 지침, 향후 공개할 데이터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각사무국의 오픈데이터 백서 발표와 같은 시기에 기업혁신기술부 등 주요 부처들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오픈데이터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육, 의료, 고용, 세금, 날씨 데이터 등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¹¹⁰⁾

그리고 2013년 1월에 BIS는 기업들이 보유한 재화와 서비스 구매형태 등의 소비자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Better Choices, Better Deals)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일환인 “Midata” 프로젝트는 정부가 26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2013년 2월에는 BIS의 ‘데이터 전략위원회’(DSB)의 요청에 따라 빅이노베이션 센터(Big Innovation Center)가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공공정보의 개방만으로 데이터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 네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것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 데이터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2013년 5월에는 공공 정보에 대한 세익스피어 검토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공공 정보를 활용한 정부서비스 개선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5개 주제별 권고안이 다음의 표와 같이 담겨 있다.¹¹¹⁾

110) 한은영, 위의 글, 3면

111) Id.

<표> 셰익스피어 검토 보고서에서의 5개 주제별 권고안¹¹²⁾

1. 소유권에 관한 원칙을 규명함: 공공 데이터는 정부가 아닌 개인의 소유물
2.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전략 개발
3. 데이터가 상업 및 공공행정 모두에서 광범위하고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활용되도록 보장
4. 신규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둔 전략(기초 데이터과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 포함)
5.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강화

이와 같이 공공 부문 정보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셰익스피어 보고서의 권고안에 대해 2013년 6월 14일에 영국 정부의 회답(The UK Government's response to the Shakespeare Review)¹¹³⁾ 있었다. 영국 정부는 정보경제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을 통해 국가데이터 전략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전략에서는 온라인 경제 진흥, 중소기업이 온라인 활동 지원, 데이터 과학을 통한 성장 추진을 강조했다.¹¹³⁾

또한 정보경제전략에서 예고하였듯이, 2013년 10월 영국 정부는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서 영국의 리더십과 능력을 구축하고, 오픈 공공 데이터에 관한 정부 정책의 명확성을 비즈니스 및 학계와 협력하여 시민과 고객, 비즈니스와 학계, 공공 및 민간분야를 위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와 가치를 추출하는 데에서 영국을 세계적 리더로 만들려는 목표로 영국의 데이터 능력에 대한 고유된 비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①숙련된 데이터 전문인력 ②데이터를

112) 한은영, 위의 글, 4면

113) Id.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및 인프라 ③데이터 그 자체 등 3가지 핵심요소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¹¹⁴⁾

2013년 10월에 국가정보인프라 설명 및 데이터셋(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rrative and datasets)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2013년 6월 세이스피어 검토에 대한 정부 회답에 정부가 국가정보인프라(NII)를 만들 목표를 설정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영국 정부는 오픈정부파트너십(OGP)에도 가입하고 ‘국가실행계획’(Open Government Partnership UK 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기도 했다. 2013년 11월에는 G8 오픈데이터헌장을 발표하였고 이것은 국가실행 계획(Open data Charter)에 따른 것이다. 또한 BIS는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면서 2012년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을 보완하여 2014년 7월에 새로운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 2014~ 2016)을 발표했다. 영국의 오픈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들을 표로 구성하면 이하와 같다.¹¹⁵⁾

<표> 영국의 오픈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¹¹⁶⁾

시기	관련 정책
2000년 11월	정보자유법 제정
2009년 12월	Putting the Frontline First: Smarter Government 발표
2010년 6월	'투명성 어젠다' 및 '투명성 원칙' 발표
2012년 3월	데이터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 설립
2012년 6월	오픈데이터 백서(Open Data White Paper) 발표
2012년 6월	각 부처별 연구소(Open Data Strategy) 발표
2012년	오픈데이터 연구소 (Open Data Institute; ODI) 설립

114) 한은영, 위의 글, 5면

115) Id.

116) 한은영, 위의 글, 6면

시 기	관련 정책
2013년 1월	BIS와 Cabinet Office Better Choices, Better Deals: Consumers Powering Growth 발표
2015년 5월	공공 부문 정보에 대한 셰익스피어 검토(Shakespear Review fo Public Sector Information) 발표
2013년 6월 14일	셰익스피어 검토에 대한 영국 정부의 회답(The UK Government's response fo the Shaespeare Review)
2013년 6월	정보경제전략 (Information Economy Strategy) 발표
2013년 10월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발표
2013년 10월 31일	오픈 정부 파트너십(OGP) 가입 및 국가 실행 계획 수립 (Open Government Partnership UK National Action Plan)
2013년 10월 31일	국가정보인프라 설명 및 데이터셋(Na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rrative and datasets)
2013년 11월 1일	G8 오픈데이터헌장 국가실행계획 (G8 Open data Charter National Action Plan)
2014년 7월	BIS, Open Data Strategy 2014~ 2016 발표

4.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의 오픈데이터 정책 선도

영국이 범부처 차원에서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도록 선도하는 기구가 내각사무국이다. 또한 기술혁신기술부는 오픈데이터를 기반으로 영국의 경제성장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전담하는 기구다. 내각사무국은 영국의 수상과 내각을 보좌하는 책임을 맡는 영국 정부 부처에 해당하는 기구다. 내각 위원회들을 지원하고 다른 부처들을 통한 정부 목표 발표를 조정하는 다양한 부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내각

사무국의 또 다른 책무 중 하나는, 정부 데이터 공개를 촉진하고 정부 업무가 더욱 투명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 내각사무국은 영국 국내 외에서 오픈데이터와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을 우선사항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더욱 개방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내각사무국의 실천 사항을 GOV.UK(2013a)를 참조해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¹⁷⁾

<표 3> 영국 내각사무국의 오픈데이터 관련 실천사항¹¹⁸⁾

- * 건강/교육/범죄 및 정의/운송 등 주요 공공 서비스 데이터에 시민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함
- *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픈데이터 자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data.gov.uk 를 마련함
- * www.data.gov.uk 사이트에서 데이터셋을 공개함으로써 공공 자금의 사용 (월간), 정부 인력의 근거무내요 및 보수(반기), 정부의 목적 대비 업무 집행 내용(반기)을 제기함
- * Contracts Finder 에서 1만 파운드가 넘는 중앙정부의 신규 계약 및 조달 입찰뿐만 아니라 500파운드를 초과한 지방정부의 모든 지출항목을 포함하여, 1천 88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함
- * 모든 정부 부처의 사업계획의 오픈데이터 책무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함
- * 공표기능한 모든 정부 데이터가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공표되도록 권리에 관한 법제를 도입함
- *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공적 신뢰 개선, 더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 방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는 오픈데이터 백서를 발표함

이밖에도 내각사무국이 밝히고 있는 주요 실천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익스피어 검토에 대한 정부의 회답(2013년 6월)에서, 정부는 국가정보인프라(NII)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후 내각사무국은 주요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협력 절차를 발전시켜왔다.

117) 한은영, 위의 글, 7면

118) Id.

국가정보인프라는 자유롭게 사용될 경우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핵심적 데이터셋을 나열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2013년 10월에 내각사무국은 국가정보인프라의 첫 번째 버전을 발표했다.¹¹⁹⁾

둘째, 데이터를 공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성했다. 내각사무국은 데이터 공표펀드를 조성하여 데이터 공표 개선을 희망하는 조직을 지원 한다. 이 펀드를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공공 데이터 공표를 제고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BIS도 오픈데이터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 펀드는 데이터 공개에 있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단기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²⁰⁾

셋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지원했다. 내각사무국은 신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기업을 오픈 데이터연구소와 함께 협력체재로 지원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익명의 오픈 포맷으로 데이터가 공표되도록 했다.¹²¹⁾

넷째, 국제적으로 투명성을 지원했다. 영국이 G8 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2013년에 G8 회원국 지도자들은 오픈데이터 현장에 동의했다. 이 현장은 데이터에의 접근, 데이터의 공개 및 재사용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영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들의 모임인 열린 정부 파트너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에는 OGP 정상회의를 런던에서 개최했다.¹²²⁾

2014년에도 내각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부로부터 고품질의 오픈데이터를 국민의 손에 안겨주기, 오픈데이터의 파워를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기, 오픈데이터 및 투명성에서 영국이 세계 리더의 위치를 유지하기가 이런 우선순위에 해당하였다.¹²³⁾

119) 한은영, 앞의 글, 7-8면

120) 한은영, 앞의 글, 8면

121) Id.

122) Id.

123) 한은영, 앞의 글, 8-9면

한편, 내각사무국과 함께 영국의 오픈데이터 정책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은 경제 성장을 담당하는 부처인 기업혁신기술부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BIS)이다. 기업혁신기술부는 무역 촉진, 혁신 신장, 비즈니스 개시 및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에 투자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및 규제영향 축소에 관한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BIS는 ‘성장’을 우선으로 하며 오픈데이터가 이러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즉, BIS는 오픈데이터가 직접인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BIS는 오픈데이터가 창출하는 경제적 기회를 높이 평가하고 BIS가 원하는 개혁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오픈데이터의 직접적 기여를 기대한다. BIS는 새로운 정보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존 공공 부문 정보의 경제적 영향을 높이고 새로운 공공 부문 정보를 공개하는데 전념한다. 이를 통해 BIS는 무료 데이터의 재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그 가치를 보장한다.¹²⁴⁾

5.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체계는 공공데이터 그룹과 데이터전략위원회가 데이터의 공급자와 고객의 기능을 각자 수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공공데이터 그룹은 공공 데이터의 수집, 관리, 개선, 보급과 관련된 4개 공공 분야 기구들로 구성되고, 데이터전략위원회에 오픈데이터를 조달한다. 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오픈데이터 전략에 대해 의견 제시하고 이를 수정,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¹²⁵⁾

데이터전략위원회와 공공데이터그룹의 설립과 역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데이터전략위원회는 2012년 3월에 공공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해 BIS에 의해 설립되었다. 데이터전략위원회는

124) 한은영, 앞의 글, 9면

125) Id.

공공 부문을 대표해 공공데이터 그룹과의 계약을 조종하고, 공공데이터 그룹의 데이터가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각 장관들에게 오픈데이터와 관련해 적정한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데이터전략위원회는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 장관들에게 조언한다. 첫째, 데이터전략위원회는 납세자를 위해 금전적 가치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오픈되어야 할 데이터에 대해 조언하고,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결정한다. 둘째, ‘열린 정부’ 라이센스에 따라 배포가 무료인 데이터에 대해 가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셋째, 개방된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조언하며, 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그룹의 모든 계획을 분석하고 검토한다.¹²⁶⁾

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에 오픈데이터 이용자 그룹(Open Data User Group)은 국민과 산업계 등 데이터 사용자를 대신하여 현재 미공개된 데이터셋에 대해 이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 공개의 최적 수준을 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대중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공공데이터 그룹은 BIS 장관에 대한 자문 그룹으로 2011년에 출발했다. 공공데이터 그룹은 기업, 부동산, 날씨, 지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개선, 관리, 보급하는 영국의 4개 공공 분야 기구들인 기업 등록소, 토지 등기소, 기상청, 국립 지리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기관들은 국가정보인프라(NII)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국가 및 국제적 비즈니스, 공공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둘째,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의사 전달하고 그 사용방법에 대한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기타 개발자들의 발전을 지원한다. 셋째, 효율성과

126) 한은영, 위의 글, 9-10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더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분야를 지원한다. 넷째, 관심도가 높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셋을 오픈데이터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¹²⁷⁾

6.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영국의 오픈데이터 정책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력 양성에 관한 것이다. 2013년 2월 데이터전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빅이노베이션 센터는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공공정보의 공개만으로 데이터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문 인력 양성을 포함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법제도적 틀 마련, 데이터 데스트 베드 구축 등 네 가지를 영국의 정책입안가들이 집중해야 할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2013년 6월에 발표된 정보경제전략에서도 정보 기술을 창조하고 개발시키는 전문 인력과 이를 활용하는 비전문 인력 모두 포함하는 고도로 숙련된 디지털 인력이 디지털 인프라와 함께 정보 경제전략의 장기적인 성공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소개되었다.¹²⁸⁾

2013년 10월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에서도 인프라나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를 강조하였다. 특히 데이터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정부 개혁을 통해 진학과 데이터 분석직의 필수적 기술인 컴퓨팅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니 학생을 배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부문의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⁹⁾

첫째,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정부 개혁을 통해 5세에서 16세 학생들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컴퓨팅 국가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진학 및 데이터 분석 직업에 필수적인 기술인 컴퓨팅 및 과학에서 우수

127) 한은영, 위의 글, 10-11면

128) 한은영, 위의 글, 12면

129) 한은영, 위의 글, 13면

능력을 지닌 학생을 배출한다. 둘째, 컴퓨터 과학 교사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셋째, 교사가 되고자 하는 컴퓨터 과학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400명의 ‘마스터 교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조성한다. 넷째, 수학 교과 과정을 개혁하여 학생들이 분석 기술 기초에 능통하도록 한다. 다섯째, 핵심 수학 자격증을 도입한다. 여섯째, 도제 시스템을 개혁하여 데이터 및 비즈니스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술에 집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¹³⁰⁾

이 외에도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력 및 진로 부문과 함께 정부의 분석능력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먼저 경력 및 진로와 관련해, 아직까지 데이터 과학자들이 명확히 인식된 직업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의 이미지를 학문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분석 능력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공문원의 기술능력과 친숙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¹³¹⁾

7. 오픈데이터를 통한 혁신 및 경제 성장 도모

영국은 정보경제전략을 통해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공공영역 정보에 접근하고 재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 및 조직, 특히 중소기업이 ICT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 국내외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영국은 공공 부문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혁신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오픈데이터 활용 기업을 위해 다음 <표>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¹³²⁾

130) Id.

131) Id.

132) Id.

<표 5> 영국의 오픈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지원책¹³³⁾

지원책	내 용
Open Data Challenge Series	BIS는 오픈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0만 파운드 이상 제공함
Innovation Vouchers	기업은 오픈데이터를 사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새로운 공급업체와 협업하기 위해 5천 파운드까지의 혁신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음
Connected Digital Economy Catapult	5천만 파운드 이상의 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Connected Digital Economy Catapult는 영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사업을 개발하고 촉진하도록 지원함

그리고 영국은 오픈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오픈데이터 연구소는 오픈데이터의 잠재력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신생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정부의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혁신과 가치창출 등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연구소는 2013년 6월 ‘열린정부 파트너십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2013~2015’(Open Government Partnership: UK National Action Plan 2013 to 2015)의 초안을 작성해 내각사무국에 제출하는 등 영국의 오픈데이터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¹³⁴⁾

133) 한은영, 위의 글, 14면

134) 한은영, 위의 글, 13-14면

<표 6> 오픈데이터 연구소(Open Data Institute)의 주요 역할¹³⁵⁾

- * 오픈데이터 연구소는 기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오픈데이터의 활용 기회를 높여 국가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
- * 오픈데이터 활용 기업의 배양 및 육성에 주력함
- * 오픈데이터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신생기업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의 오픈데이터를 이용한 혁신과 가치창출 등 생태계 구축을 지원함

8. 다방면의 데이터 개방 추진

영국정부는 여러 보고서와 정책을 통해 데이터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9년 12월에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보고서에서 수많은 공공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이를 무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에서는 접근성과 활용성을 겸비한 풍부한 데이터 확보를 강조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의 G8 오픈 데이터현장 국가실행 계획에서도 G8 오픈데이터현장에서 확인된 핵심 데이터셋을 비롯해 높은 가치를 지니 데이터셋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오픈데이터 전략에서는 ‘데이터 개방을 기본으로 함’을 핵심원칙의 하나로 삼았다. 이 오픈 데이터 전략에서는 BIS 웹사이트에서 공개되는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유연한 이용과 재이용을 장려한 ‘열린 정부 라이센스’(Open Government Licence:OGL)에 의해 커버된다고 하면서, 파트너 조직들도 ‘열린 정부 라이센스’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로 공개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¹³⁶⁾

135) Id.

136) 한은영, 위의 글, 15면

영국은 2013년 1월에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 중인 소비자 정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Better Choices, Better Deals)도 발표하였다. 영국은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¹³⁷⁾

영국은 공공 정보와 소비자 정보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받아 수행된 연구 데이터에 대해서도 접근을 개선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학술논문 및 기타 작업에 대한 대규모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하게 하여 비상업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¹³⁸⁾

이처럼 영국은 오픈데이터 분야의 세계적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 데이터 개방에 관한 여러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2010년 이후에는 data.gov.kr 사이트를 통해 1만 개 이상의 데이터셋을 공개하였다. 영국에서 공개 대상 데이터의 범위는 공공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데이터, 학술 데이터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조합 및 연동 등의 활용성까지 감안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가용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이터들과 조합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다. 2010년 6월에 공표된 투명성 원칙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 플랫폼까지 오픈소스로 개방하여 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고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¹³⁹⁾

137) Id.

138) 한은영, 위의 글, 15-16면

139) 한은영, 위의 글, 16면

9.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조

영국은 오픈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들을 보완해 왔다. 1995년 EC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데이터보호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데이터보호법을 1998년에 마련하고 2000년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2012년 11월에 익명화 규약이 영국 정보감독청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규약에서는 익명화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익명화된 데이터의 게시 미 공유가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노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 권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¹⁴⁰⁾

이 외에도 그간 오픈데이터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스마트 정부 구현의 실행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세부실행계획을 발표할 때 영국 정부는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는 계속 보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공공정보에 대한 세익스피어 검토 보고서의 제안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면서 데이터의 기밀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확보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분명하고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권고하였다.¹⁴¹⁾

영국은 특히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을 통해 데이터 역량에 있어서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 전략에서 영국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하는 강력한 전략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상품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140) Id.

141) 한은영, 위의 글, 16-17면

하는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의해 데이터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개인의 데이터가 정부, 민간기업, 연구소에 의해 취급되고 처리될지라도 개인은 프라이버시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 전략을 통해 영국은 21세기 현실에 맞추어 데이터 보호규칙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 집행 당국에 의한 데이터의 필요하고 균형된 사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면서 시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의 데이터 보호 법률의 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에서 영국 정부는, 정보경제위원회와 협력하여 데이터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언을 고취하는 옵션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삼았다.¹⁴²⁾

또한 2014년 발표된 BIS의 새로운 오픈데이터 전략에서 오픈데이터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수요와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예외조항도 언급하였다. 즉, 부정적 경제 효과가 크거나 민감한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개인과 소비자의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¹⁴³⁾

영국은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 기능을 데이터전략위원회와 공공 데이터 그룹이 분리하여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공공데이터 그룹은 데이터전략위원회에 오픈데이터를 조달하고 데이터전략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오픈데이터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의 오픈데이터 이용자 그룹은 공개되어야 할 데이터셋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에 요청하는 역할을 행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와 대중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¹⁴⁴⁾

142) 한은영, 위의 글, 17면

143) 한은영, 위의 글, 17-18면

144) 한은영, 위의 글, 19면

영국 오픈데이터 정책의 또 다른 시사점은 생산-유통-활용과 이를 위한 ‘기반’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데이터의 ‘생산’ 측면에서 영국은 다방면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영국은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다시 제공하고 있고, 공적 자금을 받는 연구데이터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개선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비상업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데이터 플랫폼까지 오픈 소스로 개방하는 등 데이터의 공개 자체뿐만 아니라 활용성까지 감안한 공개로 나아가고 있다.¹⁴⁵⁾

145) 한은영, 위의 글, 19-20면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아래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정보공개법 제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주는 영국 정보공개법 제의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본다.

<표> 한국과 영국의 정보공개법 제의 비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영국 정보공개법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모든 국민
공개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다만 스코틀랜드 지방에 파견된 중앙정부 기구는 2000년 정보자유법 적용 대상임. 공공기관의 결정권은 법무장관에게 주어짐.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영국 정보공개법
공개 대상 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④각급 학교 ⑤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 ⑥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⑦사회복지법인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중 정보공개 의무를 면제받는 면제 대상을, 완전 면제, 제한적 면제가 있다. 또한 ‘제한적 면제’에는 ‘불이익 심사에 의한 면제’와 ‘분류에 의한 면제’가 있다.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 ③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 ④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정보 중 ‘완전면제’ 대상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정보, 대내첩보국, 해외첩보국, 정부보안사령부 등의 국가 안보 기구가 보유한 정보, 법정 기록, 의회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공무의 효과적 수행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 정보,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된 정보,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있음.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영국 정보공개법
비공개 정보	<p>⑤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p> <p>⑥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p> <p>⑦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p> <p>⑧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제한적 면제’ 대상에서 ‘불이익 심사에 의한 면제’ 정보에는 국방, 국제관계, 국내관계, 국가의 경제적 이익, 법집행, 감사기능, 공무의 효과적 수행, 보건과 안전, 사업상의 이익이 있고, ‘분류에 의한 면제’ 정보에는 공표 예정된 정보, 국가안보,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 내용, 정부 정책 형성, 국왕과의 의사소통, 환경 정보, 개인정보가 있음.
정보 공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 서면의 경우 ①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서명신청서의 제출에 의한 공개. 정보공개 신청서는 이메일로 대체할 수 있음.
공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법 제15조)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영국 정보공개법
부분 공개 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14조). 	
정보 공개 여부 결정 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 제13조제1항)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3조제4항) 	요청된 종보를 갖고 있고 그것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은 근무일 기준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정보 공개 절차		
사전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7조 제1항). 	
공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 • 공개결정 간주규정 없음(현행 법에서 삭제) 	신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영국 정보공개법
정보 공개 절차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7조제1항)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18조 제1항). 7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 (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p>신청된 정보의 공개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 최초의 이의신청은 해당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그에 대한 ‘내부심사’(internal review)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언제 재려지게 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고해 주어야 함. 내부심사는 공개 거부 결정을 내린 당사자 이외의 직원으로 상급직원에게 맡긴다. 내부심사는 보통 2~3주 안에 마무리 되지만 복잡한 경우, 특히 공익성심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p> <p>내부심사를 통해서도 애초의 공개 거부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자는 이를 정보판무관에게 항소할 수 있음.</p> <p>신청자는 공고기관이든 정보판무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면, 3차 이의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음. 정보공개 심판소에서 이 3차 이의신청을 다룸. 정보공개심판소의 결정은 최종심급의 판단으로 사법적 구속력을 가짐.</p>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구 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영국 정보공개법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법 제 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 거부 요청가능(법 제21조제1항)• 공개사실의통지 및 행정쟁송 (법 제21조제2항)	

위에서의 비교를 통해 영국의 2000년 정보자유법을 중심으로 한 영국 정보공개법제가 우리 정보공개법제 마련에 주는 시사점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았다. 공개대상 기관의 광범성, 정보 공개 면제대상 정보 유형에 대한 구체성, 불복절차에 있어 세 차례에 걸친 이의신청 절차 등의 비교에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의 배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영국 정보 공개법제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영국의 경험이 우리나라 정보공개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주는 시사점까지 정리해보았다.

영국의 2000년 정보자유법을 중심으로 한 영국 정보공개법제가 공개 대상 기관의 광범성, 정보 공개 면제대상 정보 유형에 대한 구체성, 불복절차에 있어 세 차례에 걸친 이의신청 절차 등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법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이러한 경험과 시사점을 좋은 타산지석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오항녕, “영국 정보공개제도의 발달과 현황 : 미완의 여정” 「기록보존」 1999년 (제12호), 행정자치부정부기록보존소.

정준현, 「빅 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14년 10월 31일

정준희, “영국의 정보자유법과 언론”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 2008년 상권(통권 제23호),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2008년 7월 25일

한은영, “영국 오픈데이터 정착특징 및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23호 (통권 591호) 201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년 12월 16일

외국문헌

Birkinshaw, P.(2002),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K and Europe: Further Progres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Vol. 19. pp.77~86.

Brooke, H.(2005), The UK's openness watchdog lacks teeth and transparency. *Open Government: A Journal on a Freedom of Information* , Vol. 1(3).

HMSO(2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c. 36).

참 고 문 헌

- Holsen, S. et al.(2007), Journalists' use of the UK Freedom of Information Act. *Open Government: A Journal on Freedom of Information* Vol. 3(1).
- Leader(2006), “Stepping back into the dark”, *The Guardian* , 2006년 10월 30일자.
- Moore, M.(2007), *Public interest, media neglect. British Journalism Review*, Vol.18(2). pp.33~40.
- Rosenbaum, M.(2004), Open to Question - Journalism and Freedom of Information.
- Turle, M.(2007a), Freedom of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law - A conflict or reconciliation?,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Vol. 23. pp.514~522.
- _____ (2007b), Freedom of inform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test,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 Vol. 23. pp.167~176.
- Turle, M. and Horden, V.(2005), Introduction to Freedom of Information Act,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 Vol. 21. pp.415~419.
- Worthy, B.(2008), The Future of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nited Kingdom, *The Political Quarterly* , Vol. 79(1). pp.100~108.
- Freedom of Information Ltd.(www.freedomofinformation.co.uk)
-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www.ico.gov.uk)
- The Campaign for Freedom of Information(www.cfoi.org.uk)

부 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영역에 속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리(법 제9조 제1항) → 모든 사람(개인, 법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 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1조 제1항) → 당사자[즉, 자신이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any person)” (U.S.C. § 552 (a)(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국민 제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에 한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법 제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에 한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인(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개인(every person)은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으나 당해 정보가 공개대상인 정보인 외국인을 별도로 차별하지 않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시청구권자로 ‘누구든지 (何人も)’라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 이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을 갖지 않은 사단, 재단 모두 청구권자가 됨.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 연방의회 내지 연방법원은 연방정보자 유법(FOIA) 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 • 주(州) 정부 기타 지방정 부는 연방 정보자유법 (FOIA) 상 공개 대상기 관이 아님.	법적인 기 관(연금보안 센터 및 농 업연금연구 소의 문서 포함) ⑥ 의회의 기관 ⑦ 스웨덴인들 의 자치자구인 울란드(Aland) 의 행정기관 과 올란드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 ⑧ 독립적인 위 수법인 ⑦ 사회복지법인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연 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 금을 받는	• 연방의회 내지 연방법원은 연방정보자 유법(FOIA) 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 • 주(州) 정부 기타 지방정 부는 연방 정보자유법 (FOIA) 상 공개 대상기 관이 아님.	• 연방의회 내지 연방법원은 연방정보자 유법(FOIA) 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 • 주(州) 정부 기타 지방정 부는 연방 정보자유법 (FOIA) 상 공개 대상기 관이 아님.	에 따라 설립 된 비법인 사 단(위원회, 협 의회, 하부-협 의회 혹은 다 른 단체)은 이 법률의 적용 에 관하여 규 정된 유권기 관에 해당하 지 않지만, 당 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국가행정조 직법에 따 른 기관(경 찰청, 검찰 청 등)	4) 회계감사원 5) 국내부 및 그 소속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독립행정 법인등의 정 보공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독립행 정법인 등 1) 각종 행정법인 2) 국립대학법인 3) 대학공동이 용기관법인 4) 특수법인 (일본중앙경 미회)	에 따라 설립 된 비법인 사 단(위원회, 협 의회, 하부-협 의회 혹은 다 른 단체)은 이 법률의 적용 에 관하여 규 정된 유권기 관에 해당하 지 않지만, 당 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기관 또는 단체	기관 또는 단체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 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타 의 유사한 기관들이 포함 ⑨ 법, 명령 등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 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 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 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 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 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 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 복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속하는 공문서 (법 제6조 제1항 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서(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 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영역에 속하는 공기관이 적무상 작성, 또 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법 제3조, 제2조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U.S.C. § 552(f)(1)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일자에 대한 기록(법 제3조, 제2조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모 든 정보 중 정 보공개 의무를 면제받는 면제 대상을, 완전 면제, 제한적 면제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정보 - 저 장방식을 불문하고 공적 목적에 사용 되는 일체의 기록(법 제2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포크 아일 랜드의 유권 기관을 보조 하거나 그에 관련된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에 의하여 설 치된 비법인 사단이 위원 회, 협의회로 구성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포크 아일 랜드의 행정 기관이 정부 기록 내지 문 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 안내장, 제안서, 탄원서등 (부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 행정기관의 직무상 원이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도면 및 전자 기록(법 제2조 제2항)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 있는 경우, 제공에 부수 되는 정보 및 그러한 제공을 고려하기 위하여 준비된 기타의 의견 및 작성된 문서(§ U.S.C. § 552(f)(1)(B)).	주체가 당해 연방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 역시 포함된다.	(4)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의 예산발의 (5)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에 대한 대안, 이유,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및	심판소에 정 보공개를 청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 국방 및 안보 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통계 기타의 의견</p> <p>⑥ 의사록</p> <p>⑦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p> <p>⑧ 당국의 결정, 발표, 법률문서, 계약 및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아니 한 비방록, 의사록 및 기타의 문서들</p> <p>⑨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p> <p>⑩ 위원회의 보고서, 논문 및 일반인에 허여 배포할</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의도로 작성된 기타 유사한 문서들</p> <p>• 당국에 제출된 문서로서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법 제5조 제2항 전단, 법 제6조)</p> <p>• 일반적으로 배포해야 할 문서(법 제8조)</p>	<p>•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p> <p>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p>	<p>•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24조 제1항 각호)</p> <p>① 정부 외교통상위원회의 문서, 외무부 장관의 정치적 평가, 외국과의 정치적 또는</p>	<p>정보 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3조) 1.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와 같은 경우</p>	<p>정보 보존장소, 형식, 미체를 불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제3조) 1.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와 같은 경우</p>	<p>•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5조 각호)</p> <p>①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p>	<p>•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5조 각호)</p> <p>①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② 국가인천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p> <p>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p> <p>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의 문에 관한 사항</p> <p>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p>	<p>경제적 협상 관련 및 외무행정 분야의 정보를 회복하는 행위를 통해 실제 절차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장관이 할 수 있음)</p> <p>핀란드와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p> <p>국제적 협약, 조약,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p> <p>국제적 협약, 조약,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p>	<p>지가 특별히 하기되고 대통령에 의해 실체 절차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②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규칙 및 관련 행정에만 관련된 사항</p> <p>①에 규정된 것 이외의 문서, 국제재판소, 국제조서기구 또는 기타의 국체기관에 관한 사항</p> <p>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p>	<p>보유한 정보, 법정 기록, 회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공무의 효과적 수행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 정보,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된 정보,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있음.</p> <p>③ 법률에 의해 공개가 면제된 사항</p> <p>④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비 нар권이 인정되는 정보 또는 비밀에 속하는 상업</p>	<p>군사적 이익과 그밖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c) 내적인 또는 외적인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d) 재무, 경쟁, 규제를 당하는 대상에서 '불이익심사'에 의한 면제' 정보</p> <p>인정되는 권리 또는 관계, 국내 정체적 경제적 이익, 감사</p>	<p>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에 간주된다. 이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② 법인 그 밖의 단체에 관련된 정보 또는 상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계된 정보로서 아래 각 목에 규정된 것.</p> <p>③ 공개됨으로서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 사결정 과정 일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p> <p>(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p> <p>(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p> <p>(8) 공개될 경우</p>	<p>의 당국, 자 연인·법인과 핀란드 공화국, 핀란드 시민, 핀란드 주민 또는 핀란드에서 영업하는 범 인의 관계에 관한 문서</p> <p>(3) (i)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경찰 기타 당국, 검사, 조사와 감독</p> <p>(3) (ii) 범죄수사에 관여하는 당국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국에 대하여 작성하는 범죄 보고서.</p>	<p>정보 내지 금융정보에 해 당되는 사항</p> <p>(5) 행정기관과의 소송관 계에 있어 행정기 관 행정기 관 행정기 관에 각 서 또는 서 신에 해당되는 사항</p> <p>(6)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게 될 인사 내지 의료에 관한 정보에</p>	<p>기능, 공무의 효과적 수행, 안전, 사업상의 이익 있고, '분류'에 의한 면제'</p> <p>f) 금지되어 있는 대외경제 교류에 대한 보호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g) 진행중인 재 소통, 환경 정보, 개인정보가 있음.</p>	<p>c) 재무에 대한 외적 통제와 관련된 사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f) 금지되어 있는 대외경제 교류에 대한 보호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g) 진행중인 재 소통, 환경 정보, 개인정보가 있음.</p>	<p>외국 또는 국제기관 등에 손상을 우려 또는 국체기관에 줄는 이국 또는 국제기관 등과의 교섭 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행정 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p> <p>④ 공개됨으로 썩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형 집행 그</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정인에 계이익을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는 기소여부로 취득하지 나작성된 문서 및 소환장 청서, 소환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	해당되는 사항 ⑦ 사법(司法) 목적으로 작성된 조사기록 내지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상의 수사 및 징계법 상의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경우	a) 국제적 협상이나 b) 행정기관의 협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국가기관, 독립행정법 인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합의, 겹도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를 결정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취득된 사진 및 기타의 신원 확인 정보, 어떠한 자에 대하여 발행된 특수한 신원증명 코드 또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행증서는 예측되는 경우 및 사법 당국이 수사비대, 세관, 교정당국의 전술적 및 기술적 계획 및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상되는 경우, (iv)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한 국가, 지방정부, 외국의 행정기관, 관공서 또는 민간기관 등 의 비밀정보 원의 신원이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및 사법 당국이 사과정에서 작성한 기록 이거나 행정 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	하여 규율되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임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경제적 거래 또는 사회보장의 경제적 이용과 관련하여 연방의 체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뢰에 기초한	서, 공개됨으로써 솔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순상될 우려, 부당하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6)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는 문서 ⑥ 접근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거나 당사 자에 대한 피 해 또는 고통 을 야기할 절 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고 소 사건에 관 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에 고소인에 관계 되는 문서 ⑦ 사립, 건물, 시설, 구조물, 데이터 및 통신 시스템 의 보안계획 의 실현과 관 련이 있거나	장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작성한 기록으로서 공개의 경우 비밀정보원 에 의해 서면 제공된 정보 가 공개되는 경우, (v) 사 법(司法)상 의 수사 내 지 소추의 지침, 기술 이나 절차를 공개하게 되 는 경우로서 그 공개가 법의 침탈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	행정에 관한 체3차의 이익 이 정보공개청 구의 시점에 여전히 존재하 는 경우, 그러 한 신뢰에 기 초한 정보 연방해외정보부 (Bundesnachrichtendienst) 및 그 밖의 연방의 행정청이나 공 공기관이 보안 감사법 (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	지방독립행 정법인이 행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 로서, 공개 됨으로써 당 해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 상, 당해사 무 또는 사 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 을 미칠 우 려가 있는 정보	• 행정문서의 준부에 관한 정보(제8조) 개시청구에 대하여 당해 개시청구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그것에 영향을 주는 문서 및 비상사태, 방위 및 사전수사와 관련된 문서	예상되는 경우, (vi)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킬 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위 각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결정 또는 임박한 행정청의 조치의 결과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법 제4조)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개시하는 것 이 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문서의 일부를 밝히지 않고 당해 개시청구를 거부 할 수 있음.			관계된 행정 문서가 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것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스웨덴,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타의 사항, 방어 준비 접근이에 관한 문서	는 상황 관련 보고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항 ⑨ 지질학, 지구 물리 학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⑪ 통화정책 또 는 외환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조치 또는 준비, 금융정책, 소득정책, 통화정책 또 는 외환정책 분야의 결정이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 한 금융 또 는 소득 정책의 준비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12) 금융시장 및 보험 운영자 및 금융시장과 보험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감독하는 당국의 체정법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13) 국민 경제에 관한 통계, 금융정책이나 시어터보, 운영체계 및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14) 멀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 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15)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16)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14) 멀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 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15)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16)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14) 멀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 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15)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16)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14) 멀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 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15)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16)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14) 멀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 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15)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16)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14) 멀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 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15)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16)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14) 멀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 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15)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16)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14) 멀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 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 (15)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 (16)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 ⑯(i)국가; 지방자치단체, 노동 파트너 또는 노동생의 당사자로서 기타의 공기 업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 (ii)농업 보조금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국가의 대리인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 ⑯(9)재판을 준비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의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역할을 하는 당국이 작성 하거나 취득 한 문서 ⑩ 사업 또는 직업적인 비 밀에 관한 정 보를 포함하 는 문서 및 기타의 유사 한 사업에 관 한 정보 ⑪ 논문 또는 기타의 과학 적 연구, 기 술적 또는 기타의 개발 프로젝트 또 는 그 평가 를 위한 기 초자료에 관 한 문서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㉙ 입학시험 또 는 기타의 시험 또는 시험에 관한 정보</p> <p>㉚ 어떠한 자의 연간수입 또는 순자산에 관한 자료, 보조금 또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수업 및 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자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p> <p>㉛ 망명자 또는 망명을 요청하는 자, 거주승인 또는 비자에 관한 문서</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㉙ 복지 수급인 또는 노동 관리의 개별 고객, 수당, 지원조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에게 부여되는 개별 고객에 대한 노동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어떠한 자의 건강상태 또는 불리한 조건, 그에게 부여되는 의료 또는 치료에 관한 정보, 그의 성적 행동 및 선호에 관한 정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㉙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형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자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p> <p>㉚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건강,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성격검사 또는 구금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의 실현가능성에 관한</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연구와 관련 한 정보 ⑧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 할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판 결을 받은 자, 재소자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 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하는 행정적 문서 및 기록 ⑧ 어떠한 자에 대한 심리검 사 또는 적 성검사 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정집병의 할 당에 대한 평가, 평가, 용인의 선발 또는 급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③ 학생복지 및 교육면제, 학 생과 수험생 의 시험결과, 학교 졸업장 에 관한 문서, 학생의 개인 적 특성에 관한 구두의 평가를 포함 하는 기타의 문서, 입학 자격시험 수 험생을 내는 학교들 가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④ 대학입학 자격시험위 원회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의 제부서 ③ 어떠한 자에 의하여 부여 된 비밀 전 화번호에 관 한 정보 또 는 모바일 통 신장치의 위 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는 문서, 개인의 주소, 거주지 또는 일시적인 거 주지, 전화 번호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기타의 연락 처에 관한 정보 ㉙ 어떠한 자의 정치적 신념 또는 사적으 로 표현된 견해에 관한 정보, 활방식, 자발 적 단체에의 참여, 관심, 기죽생활 기 타 유사한 개 인적 환경에 관한 정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정보공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서면의 경우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주소 등), 우편주소 등),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 당국의 재량권 행사 또는 결정에 필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름을 밝힐거나 신청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법 제13조 제1항 3문).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 당국은 이를 대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행정기관이 신청방법 및 을 이용 등 사전에 청하여 공표 (5 U.S.C. § 552(a)(4)(A)(i)) 	<p>서명신청서의 제출에 의한 공개. 정보공개 신청서는 이메일로 대체할 수 있음.</p>	<p>특별한 규정 없음(서면, 두로 가능)</p>	<p>1° 최고행정법원과 법원의 의견, 재정법원법전 제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제정법원법전 L.241-6조에 규정된 지방회계법원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하는 문서, 공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 552(a)(3)(A) (2)(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 - 영업에 관련된 정보 -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법 제4조 제1항) 또는 전자신청 가능(일본 충무성령 제39호 제3조) 양자 모두 ① 개시청구를 하는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및 범인 기타 단체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개시청구와 관련된 행정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제4조 제1항), ③ 개시 실시

구분	한국	핀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청구조서를 등을 설명해야 함(법 제13조 제2항).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2013-907 법률(이하 '충돌방지 등을 규정한 법률') 제20조가 규정한 공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청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동 위원회가 자신의 조사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유되고 있는 문서, 공증보건법전 제L.6113-6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인증보고서 작성 이전의 문서, 동법전 제L.1414-	- 문서의 공개가 의회나 법원을 모독하게 되는 경우 - 영업비밀 혹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 - 선거인 명부 및 관련 문서	- 법령에 관한 사항(법 제14조 제2항)	- 문서의 공개가 의회나 법원을 모독하게 되는 경우 - 영업비밀 혹은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 - 선거인 명부 및 관련 문서	• 조건부 비공개 대상정보 - 공공이익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 연방정부 혹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정책은 예산상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3조에 규정된 보건기관 종사자의 인증 이전의	이익 - 기관의 특정 업무 - 개인의 사생활 관련 호 라 정 보 - 사업에 관련 된 정보 - 연구에 관련 된 정보 - 경제에 관련 된 정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공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에게 구두로 내용을 설명하고 검토, 또는 청취되도록 서류를 교부하거나, 사본 또는 출력물을 발행함. 문서의 분량으로 인해 복사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해야 함(법 제16조 제1항) • 당국의 결정을 전산화한 공공정보의 경우는 자가 매체 또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및 사본교부(“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5 U.S.C. § 552(a)(2)) 	<p>정보제공(구두, 전자적 방식. 법 제2조 제2항, 제3항), 문서의 열람(법 제2조 제2항)</p> <p>그 밖의 방법(법 제2조 제2항)</p>	<p>문서(인증 평가 과정에서의 문서, 2001년 사 회 보장 재정에 관한 2000년 12월 23일 제 2000-1257호 법 제40조에 규 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 특정인 을 위하여 시행 된 서비스제공 계약의 이행에 있어 실체 작성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서로서 청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사본교부, 전자적 공개(법 제14조 제1항) - 청구인에 대한 통지를 수취할 수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우편 주소 등)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자작 형태의 사본을 발부 하여 제공(법 제16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근이 허용 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접근은 사본 또는 출력물, 전자적 형태의 사본으로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법 제16조 제3항) 	<p>청구에 대해 문서로 담할 의무 또는 정보공개 담하기 구에 위해 별도의 목록 통계 등 형태의 기록이나 문서를 세로이 작성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 청구방법 기관의 사무 직원, 혹은 장관의 보좌관에게 현재 전화번호 부 등에서 명시된 중앙 혹은 지역 사무실로 신청 기관 주소로 선불우편신청 기관이나 장관이 명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 발송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부분공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공개 가능 - 문서의 일부만 기밀인 경우, 기밀인 부문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도 접근이 가능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공개 허용 (5 U.S.C. § 552(a)(1))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공개 허용 (5 U.S.C. § 552(a)(1))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가 누설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정보공개 가능 가능한 범위에서 부분공개 허용(법 제7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면(이메일 도 가능) - 청구대상 정보를 정확히 보를 정확히 적시해야 함. 정보 공개 법 제2조에 따라 행정청은 그 일반성 또는 불명확성 때문에 신청된 정보를 가려낼 수 없는 그런 정보에 답신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혹은 장관은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의 링크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6조 제1항).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정의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결정 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 제13조제1항) • 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거부결정 시 ①거부사유, ②자신이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③서면 접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신이 그 당국에 전송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야 함.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함(법 제14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 청탁과 관련 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5) • 정보기관은 근무일 기준으로 신청서가 접수 된 지 20일 이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p>요청된 증보를 갖고 있고 그 것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경우</p> <p>(a)(4)(A)(i)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p> <p>접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신이 그 당국에 전송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야 함. ④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함(법 제14조제3항)</p>	<p>2국적 정보관에 관하여는 규정없음.</p> <p>3국적 정보관에서는 문서로 제3자에게 결정통지(법 제8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즉석에서의 열람, 종이 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매체 등을 통한 공개 중에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 가능하다 : a) 즉석에서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 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거나 경우는 제외), b) 재생산이 문서보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공개의 요건 - 기관이나 장관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 비공개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문서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 - a) 즉석에서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 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거나 장관이 삭제를 통해 수정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 및 일부 공개 결정 시 그 취지 및 장소, 일시, 개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결정 시 지체 없이 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법 제9조 제2항)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청에 의해 활용되는 장면체에 일한 또는 그 저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본에 대 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된 사본 이 청구와 무관한 정보 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나 장 관이 수정된 사본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할 때 -수정의 성질 및 정도 -문서를 수정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 -청구인이 수 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 을 거부할 것 	

국 본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구 분							<p>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정 구 및 청구인 과의 상의에 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이나 장관의 일부공개 의무 -수정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청구인에게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전 공표	<p>• 공표의무 규정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p> <p>• 문서의 일반적 준재</p> <p>- 국민 경제의 발전에 관한 통계자료,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및 세부사업 계획, 자본 및 금융 시장에 대하여 명백하게 영향력을 갖는 기타의 유사한 문서들은 제6조 및 7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표되</p>	<p>•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의 경우 이 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 (5 U.S.C. § 552(a)(6)(A)(i))</p>	<p>•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의 경우 이 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 (5 U.S.C. § 552(a)(6)(A)(i))</p>	<p>관련 규정 없음</p>	<p>매체와 양립가능한 저작마체에 복사한 것을 비용으로(그 비용은 명령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 러한 재생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 서) 고부하는 것에 의해, c)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처리가능할 경우에 무료로 전자메일 형태로 이루어 진다.</p>	<p>• 일부 공개 시의 통지 내용 - 수정된 사설 이라는 사실 - 삭제의 근거 - 삭제된 사안 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이유</p>	<p>• 공표의무 규정 준재하지 않음. 다만 법 제 24조에 서 “정부는 보유하는 정보의 총합 공개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 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충</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8조). [1]	어야 함(법 제8조).						실하게 노력하여 한다”고 주의적,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 간주규정 없음 (현행법에 서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2주 이내 • 신청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기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조치 또는 비정상적인 양의 작업을 요하는 문체에 대한 검토, 결정에 대한 이유가 있 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법 제14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이 비용 관련 액수, 납부방법, 면제사유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 (5 U.S.C. § 552(a)(4)(A)(i)) 하되, 합리적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함. •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한 검증에 대한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법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가 접수 된 시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에 대한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나(법 제74조 제5항) 하지 않은 기술(記述)을 문서에 관한 것에 기술부분을 가리거나 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를 헌 습김 또는 분리 이후 청구인에게 전달된다(동법 제6조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의 통지 - 청구와 관련하여 문서공개에 대한 기부의사 - 실무상 거부 사유 제시 - 청구인이 일정기간 상담 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관이나 장관 사무실의 직원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고지 - 청구인이 상담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기간(상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법 제10조) 	

국 본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구 분							간)이 청구인 이 통지를 받 은 날 날부터 14일 이라는 것 고지 - 청구 수정에 대한 보조 조치	• 청구인이 상 담기간 내에 통지에 따라 상담 직원에 게 연락을 하 는 경우, 기 관이나 장관 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무상 기부시유가 없 도록 청구내용 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 실비법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7조제1항)	• 문서의 복사, 출력의 형태로의 정보접근, 기술적인 터페이스 또는 전자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당국이 제공한 서비스의 검색 및 전달에 대하여는 수수료 부과 (법 제34조)	•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 행정기관에게 기속될 수 있는 적무행위에 대해 수수료와 경비 정수(법 제10조 제1항)	•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른 정보를 받은 청구를 받은 유관 행정청은 한 달 내 답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 면 침묵은 무시적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료 정보의 경우 5년 미만된 정보인 경우에는 8일이고 5년 이상 된 정보의 경우	• 기관은 법령상 의무가 있거나 협약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 정보공개 대상자 일반 대중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나 범인격이 있는 단체	• 실비법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6조제1항)	• 기관은 법령상 의무가 있거나 협약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 공개청구 에 대해 개여부를 결 정해야 하는 기간 내에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 정적 구제질 체에 따른 불 복신청 없이 사법적 구제 절차 이용 가 능(U.S.C. §552 (a)(6)(C)(i)) • 사법적 구제 절차 (5 U.S.C. §552(a)(4)(B))	는 1개월이 기 한이다.	는 1개월이 기 한이다.	- 정보를 다른 웹 사이트에 대 한 링크를 공개함 -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하여 웹사 이트에 공개 함.	- 정보를 다른 웹 사이트에 대 한 링크를 공개함 -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에 관하여 웹사 이트에 공개 함.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18조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18조제2항) • 행정소송절차(법 제19조제1항),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가능(법 제19조제2항) • 행정 소송(법 제20조제1항) 	<p>신청된 정보의 공개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 최초의 이의신청은 *정보공개관련 제9조 제4항)에 정한 규정에 관한 책임,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서서비스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관련 제9조 제4항)에 정한 규정에 관한 책임,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서서비스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p>	<p>신청된 정보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기부의 무시적 결정 또는 무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서서비스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 • 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 • 정보공개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무이행소송제기 가능(법 제9조 제4항)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거부 결정을 내린 당사자 이외의 직원으로 상급직원에게 말 긴다. 내부심사는 보통 2~3주 안에 마무리 되지만 복잡한 경우, 특히 공익 성심사가 필요 한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 6주 까지 소요될 수 있음.	내부심사를 통해서도 예초의 공개 거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자는 이를 정부 관무관에게 항소할 수 있음.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신청자든 고기관이든 보관무관이 란 결정에 해 동의할 수 없다면, 3차 이 의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 음. 정보공개심 판소에서 이 3 차 이의신청을 다름. 정보공개 심판소의 결정 은 최종심급의 판단으로 사법 적 구속력을 가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해 관계 있는 제3자 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가 부 요청 가능 (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 통지 및 행정장송(법 제21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 또는 기밀제한의 해제에 있어 관련 정보의 동의를 요구함(법 제16조제3항, 제26조제1항~2호,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2호). 			<p>정보 공개를 배제할 보호가 치는 이유를 갖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부여 (법 제8조제1항)</p> <p>공개결정의 통지, 결정이 준수력을 발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정보공개 가능 (법 제8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비용의 징수의 요건 - 그 개인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음 - 개인에게 접근권을 부여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법 제13조), 2주일 일 이내에 공개거부요청 가능(법 제13조제3항) • 불복신청(법 제20조) 및 행정소송(법 제21조) 	